

최종보고서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4. 7.



해 양 수 산 부

최종보고서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4. 7.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7월

연구 기관 : 부경대학교

연구총괄책임자 : 김 병 호

연구 원 : 박 종 운

김 대 영

요 약 문

제1장 서언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어업은 어장 및 자원의 여건, 노동력 수급 여건, 그리고 시장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장이 축소되고, FTA협정이나 WTO체제에 따른 보조금의 중단 등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업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도탄에 빠진 어업인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지면서, 최근 어업질서가 우려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율관리어업인데,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규제의 범위내에서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리규칙을 정하여 협동에 의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이 정책의 목표에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관련어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시작단계에서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며, 어업인 의식개혁 내지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러한 일은 교육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식개혁 내지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어업인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것이며, 아울러 어업인 단체의 직원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설정과 시행계획, 교재개발로 크게 구분하고, 교육과정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운영지침을 설정하였다.

제2장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1.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은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을 도출해 내고 정형화하지 못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의 규칙을 여건의 변화에 조응해서 탄력적으로 정하고, 이들 규칙을 공동체적 협동에 의해 준수함으로써 최대의 어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단체적 어업관리를 내포한 어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관련어업인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협력에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흔히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이행을 어업인 의식개혁운동과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어업인 스스로 더욱더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가속화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수단

최근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종래와 같은 어업의 방식으로는 수산업 유지·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존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수산업이 갖는 존립의의는 ①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②생산의 효율화, ③어업인 소득 및 복지의 향상이라는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급률 목표는 양적 기준에 의한 자급률이 아니라 질적 기준 내지 가치기준에 의한 자급률로써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급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생산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어획고에 대한 어업총비용의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어업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조업방법이나 물적수단에 관한 자체규정을 정하고 다 같이 이를 이행할 때라야 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개별어업자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어업경비율을 저하시켜서 생산의 효율화와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적정보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인 것이다.

어업인 소득 및 복지의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어업인의 소득이 다른 산업부문 종사자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키며, 최소한의 여가시간이나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어업소득 증대는 품질관리나 부가가치 증대 등 시장대응적 생산을 통한 수익증대와 어업경비의 절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어가나 개별경영의 단위로써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어업인 집단을 단위로 추진되어야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업을 편안하고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도 어업인 상호간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업의 방식이 바로 자율관리어업인 것이다.

3.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목표

자율관리어업이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업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하고 궁리하는 합리적인 어업인으로서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업인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스스로를 어업에 침전된 계층이라 여기며, 소극적·수동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어장 및 자원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나 책임의식을 결여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조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어업인 간에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관계형성에도 장애요소가 된다. 즉, 스스로가 침전된 계층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어업인에 대해 신뢰감이나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을 동료로서 인식하여 어업에 관한 일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경쟁상대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종에 있어서 어떠한 어업관리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일지 해답을 찾아내는 가능성은 당해어업인들로부터만 구할 수 있다. 그것도 개개 어업인에게서가 아니라 관련어업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동에 의해 부단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주체의 의식 변화가 절대적인 요건이며, 주변적 주체로서 어업인 단체와 관련 공무원의 의식 및 자세의 변화도 병

행되어야 한다.

먼저 어업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심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첫째, 어업인들로 하여금 직업에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업에 있어서 어업인간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어업관리제도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넷째, 지역 어업인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어업인단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항을 목표로 교육한다.

첫째로 어업인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함께 수산업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둘째로 어업인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각각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로 어업현장과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친숙한 직원이 되도록 한다.

끝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교육해야 한다.

첫째로 어업인의 생산현장에서 얻어진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둘째로 물량행정이 아니라 지도행정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4.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특성

(1)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어업인 등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다.

어업인에 대해서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건전한 경영의욕을 갖도록 하고, 동료어업인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 제도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며, 어업인단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어업인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직무가 어업인들의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게 기능하는지를 자각하게하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자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생산현장에서 습득한 지혜를 존중하고 무사안일형의 행정이 아니라 소신행정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

(2)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특수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다.

어업인 등에 대해 의식을 개혁하는 일도 어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 경영기법에 대해 어업인 등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의식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나 관련 사례 등을 통한 확인을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전문교육이다.

(3)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실기교육이다.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어업에 관한 이론적 전문지식을 단순히 사고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나 실습을 통한 피교육자 자신의 부단한 확인 및 숙달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습득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 실기교육이다.

나.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1) 어업인 등에 대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우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적극적이고 진지한 것이 되도록 유인

(2) 교과목은 어업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로써 편성하며,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한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전문교육이며 전문분야의 지식을 통해 어업인 등의 의식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사성의 교과목이나 교양 내지 취미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은 가능한 배제하도록 한다.

(3) 시청각 교육의 교과목이나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의 교과목 시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자율관리어업 사례의 발표나 시청각 교재를 매개로 한 간접경험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4) 교육수행 장소나 교육시기 등은 교육대상자의 편의위주로 탄력적으로 정한다.

교육대상자들에 대해 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소요하는 시간과 수고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기 등을 정함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설정

1. 여타 목표지향성 교육프로그램

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교육프로그램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별 전문 교육과정이 6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능별 전문교육과정이 4개,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업관리정책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2개,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정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1개, 그리고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방문교육과정이 1개, 합계 14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의 교육프로그램은 각각의 교육과정이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을 뿐, 교육행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교과목의 구성 외에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과는 다소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3개 교육과정으로, 하나는 고급간부선원들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한 것과, 안전교육과 선박안전설비의 조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교육과정 역시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이 교육대상으로 하는 어업인과는 교육대상자의 성격이 이질적이므로 교육과정의 운영도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어민교육, 직원교육,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직원교육은 다시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능별 기본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민교육과정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업인들로 교육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단위교육의 규모나 교육시간, 교과목 등이 사전에 짜여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연수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두고 있으며, 교육기간과 시기도 개략적으로 정해 두고 있으며, 어업인의 편의를 배려하여 교육장소가 가변적이고, 또한 지역별·업종별 생산활동의 시기를 감안하여 교육시기를 정하고 있다.

직원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이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의 직원에 한정되며, 이 가운데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은 의식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교육기간이나 일정에 있어서 연수원측이 대강의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정해져 있으며, 교과목의 내용이나 구성은 매년 유동적이다.

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지역사회봉사자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7개 교육과정과 후자의 3개 교육과정을 합하여 총 10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지역사회봉사자교육과정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론적 지식과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이나 정책을 이해시키며, 화합과 단결을 촉구하는 단합대회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교육기간은 7개 교육과정 모두 2박3일이며, 교과시간은 20시간 정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대상자간의 화합이나 교양을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새마을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의식교육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마. 일본의 어업인 교육프로그램

(1) 宮崎県立高等水産研修所

宮崎縣 縣立高等水産研修所の 교육 및 연수체계는 크게 양성부문과 연수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성부문은 우수한 어업취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연수부문은 수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어업인 등을 재교육시키는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양성부문의 교육목표는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어업 취업자를 양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으며, 전문적인 어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다.

교육내용은 일반 교양과목을 비롯하여 어업에 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항해·기관 및 경영관리, 자원관리 등의 전문과목을 이수한다. 또한 어업실습, 해양훈련 및 잠수훈련, 용접실습 등을 통해 실천적인 지식·기술을 배양한다.

연수부문의 교육대상자는 기존어업인, 외국인연수생, 지역주민, 유아 및 학생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기존 어업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자격취득연수와 선진기술연수가 있는데, 일정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각종 면허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2) 北海道道立漁業研修所

北海道道立漁業研修所에서는 지역 어업인, 어업인단체, 공무원 등을 위해 종합연수, 어업취업촉진연수, 기르는어업기술연수 등 3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연수는 18세 이상의 어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어업취업촉진연수는 어업취업자가 대상이며, 기르는어업기술연수는 어업취업자, 어협직원, 공무원, 여성부회 회원 등이 대상이다.

종합연수는 장래에 어촌의 지도자가 될 어업후계자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 대해 취업 후에 필요한 선박조종사 등의 자격취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실천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실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취업촉진연수는 어업인이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서 전원 합숙을 실시하며, 취득 가능한 자격에는 1급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사, 2급해상특수무전기사가 있다.

기르는어업 기술연수는 어업인이 자원관리, 재배어업, 어업경영 등에 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과 어촌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어업인의 요구에 따라 교육주제가 정해지며, 각 전문가에 의해 강의와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교과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大分県の「경영塾」

수산기본법 제23조의 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넓은 시야와 유연한 발상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수산업 담당자를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

大分縣은 1986년부터 우수한 어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漁業士강좌를 개설하여, 현재는 靑年漁業士와 指導漁業士를 합쳐 120명을 認定하고 있다. 수강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55세 이하이며, 漁家の 경영이나 유통의 개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漁業士의 배우자도 수강대상자로 한다.

교육기간은 1期당 2년이며, 1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大分縣漁業士連絡協議會의 經營漁業士가 되는데, 연령에 따라 지도어업사(40세 이하), 청년어업사(39세 이하)로 나누어진다.

(4) 漁協직원 교육프로그램(全国漁業協同組合学校)

우리나라의 수협중앙회 연수원과 교육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어협 계통단체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년한은 1년간이며, 교육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생은 어협이나 漁連에 재직하는 현직자와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졸업한 자 가운데 어협 계통단체에 취직하고자 하는 자로, 어업 및 어협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5) 일본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우리나라의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집중적이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 都道府縣별로 마련된 전문교육시설에서 지역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어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 명칭 및 내용도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과 성격이 유사한 자원관리형어업 관련 독립된 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都道府縣별로 어업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교육대상자의 구분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성격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자율관리어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어업인 등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

나. 교육대상자의 구분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상의 조직들은 그 성격과 역할을 달리하므로 자율관리어업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직 성격별로 교육대상자를 구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율관리어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어업인’, 현지 교육지도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행정·예산·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는 3부류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교육대상자별 세분화

어업인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관리어업이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인들을 그들이 속한 지역의 주된 어업의 형태에 따라 어선어업, 양식업, 혼

합형어업의 3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구별 수협 지도과 과장급 이하 직원, 자생적 조직체인 협회 및 협의회 이사 등이 교육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며, 또한 중앙회와 단위수협 조합장 및 간부는 연찬과정, 그리고 지구별 수협 지도과 직원은 강사육성과정의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3) 공무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및 어업자원국의 계장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 과장 이하, 수산기술관리소 소장 이하, 각 시·도 (해양)수산과 과장 이하가 교육대상자로 될 것이며,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지도직 공무원은 강사육성과정의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킨다.

3. 교육과정별 구체적 목표 설정

▷ 어업인과정

- ①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기본이론 및 효과를 사례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함
- 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자 육성 및 사명감 고취
- ③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및 건전한 어촌사회발전 도모

▷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 ①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식의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강화
- ② 행정을 대신한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지도 역량 강화
- ③ 자율관리공동체의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공무원 교육과정

- ① 자율관리어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 ② 사업, 조직, 재정 등의 추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 배양
- ③ 현장의 지도, 지원의 실무역량 제고와 행정서비스 마인드 고취

▷ 연찬과정

- ①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
- ② 자율관리어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세 확립
- ③ 사업, 조직, 재정 등 지역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 강사육성과정

- ①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과 전문성을 배양
- ②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4. 교육과정 운영체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주관부서로서 교육 전반에 대해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담당기관에 하달한다. 기본지침에는 교육과정별 목표,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예산 확보 및 배분, 교재개발, 교육메뉴얼의 수립 등을 포함한다.

각 교육담당기관은 해양수산부의 교육기본지침을 참고하여, 각 교육기관의 실정과 해당 교육대상자 등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계획에는 교육지침 검토, 예산배정, 강사진 선정, 연간교육일정, 교육실시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교육이 끝나면, 각 교육담당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해양수산부에게 보고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교육기관에서 송부된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차년도의 교육기본지침에 이를 반영한다.

제4장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1. 단위교육대상자의 구성

가. 단위교육대상자의 모집단

어업인과정의 교육대상자는 1개 어촌계당 어촌계장, 간사, 부녀회장, 어민후계자 각 1명씩 4명으로 하여 계산하면 7,420명이 되며, 소속 어촌계의 유형에 따라 어선 어업 2,092명, 양식업 3,292명, 혼합형어업 2,036명으로 된다. 수협 만을 한정하여 어업인단체의 교육대상자를 조사해 보면, 수협의 지도과 담당직원 188-282명 정도와 수협중앙회의 지도관리업무 담당 직원 10여명, 합계 198-292명 정도가 된다.

공무원 교육대상자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과 수산정책국 계장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 과장 이하 및 수산기술관리소 소장 이하, 그리고 각 광역시·도 및 시·군의 (해양)수산과 과장 이하 등이 해당된다고 볼 때, 전체 247명으로 추산된다.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구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어업인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공무원과정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가 각각 실행기관이 되며, 연찬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도록 한다.

(1) 어업인

단위교육의 교육생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1개 어촌계로부터의 교육대상자 4명씩을 선발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업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25명 정도가 적당하다.

(2)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공무원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4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자의 모집단 구성비율과 유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에 있어서는 소속 수협 등의 종류별로 교육대상자의 수가 안분되도록 하는 유의하고, 또한 공무원과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성격별로 교육대상자의 수가 안분되도록 한다.

(3) 연찬과정

교육대상자의 수는 10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급 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단위수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수협중앙회 부장급 이상, 어업지도자, 기타 유관단체의 장 등을 대상이 된다.

연찬과정은 어업에 관한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므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4) 강사육성과정

필도있는 교육을 위해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25명 정도가 적절할 것이며, 소속기관이나 지역별 배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지침으로써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각 교육담당기관에 하달하면, 각 교육담당기관에서는 지침을 기본으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정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1) 어업인과정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업종별 교육대상자 수요인원을 파악한 다음, 관할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교육내용 및 일정을 홍보하고 어촌계 단위로 교육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어업인이 많을 경우, 자율관리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어촌계 소속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2)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수협중앙회 연수원 연간 교육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협 등의 종류별로 교육대상자 수요인원을 파악하고, 관련 수협 등에게 교육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공지한 다음 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때, 자율관리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율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어촌계를 관할구역내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협의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3) 공무원과정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가 교육실행계획에 교육대상자 선발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시·군의 공무원이 일정한 비율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4) 강사육성과정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는 해양수산부의 강사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강사육성과정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그리고 각 교육기관들로부터 교육대상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교육대상자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도사, 수협 및 수협중앙회의 지도·교육업무담당자 가운데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한다.

2. 교육행정

가. 교육담당기관

(1) 제1안(행정계통에 의한 방안)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목표, 내용 등의 지침을 해양수산부에서 정하여 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하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다음,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

다만,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주관하되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에 교육을 위탁하고, 연찬과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되 수협중앙회 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하며, 어업인단체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은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교육을 시행.

(2) 제2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수산관련 정규 교육기관의 컨소시엄에 대해 어업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해양수산부는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며, 감독기능을 수행.

나. 교육시행 장소 및 시기

(1) 어업인과정

어업인에 대한 교육시기의 결정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의 어업사정이나 교육행정상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다소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행장소에 관해서도 현지방문교육이 적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2)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연찬과정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이나 연찬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시기 결정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어업인단체의 사정이나 연수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것이지만, 대강의 일정에 관해서 사전에 실행계획으로 정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연찬과정은 년초와 년말에 2회 실시하는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정하도록 한다.

(3)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의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교육시기는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교육프로그램과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대강의 일정을 실행계획으로 정하고, 다소간 탄력있게 시행 한다.

다. 강사요원 확보방안

어업인과정의 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어업기술 지도관이나 지도사를 대상으로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을 선행하여 실시한 다음, 이들을 강사로서 활용하게 하며, 강사육성과정을 이수한 강사요원을 해양수산부가 확보하여 강사 Pool시스템을 통해 운용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이나 공무원과정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게하며, 강사육성과정을 이수한 강사요원을 해양수산부가 확보하여 강사 Pool시스템을 통해 운용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할 목적으로 강사

육성과정의 교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해서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키도록 한다.

라. 연차별 교육시행계획

(1) 어업인과정

2차년도내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완료하는 것으로 할 때, 교육대상자가 많은 목포청과 마산청, 여수청에 있어서는 본청 외의 지역사무소를 통한 교육이나 현장방문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강사육성과정

어업인과정의 기본교과 및 참여교과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의 수는 연 2,037명이며, 1명의 강사가 교육가능 기간인 17주 내내 교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120명 정도의 강사가 필요.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최소한 150명의 강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25명 단위의 강사육성과정 교육이 6개 이상 선행되어야 한다.

3. 교과과정

가. 교수학습방법

(1) 교수학습방법의 일반적 유형

- (가) 강의법
- (나) 문답법
- (라) 문제해결법
- (마) 프로젝트학습법
- (바) 협동학습
- (사) Buzz 학습
- (아) 팀 티칭
- (자) 발견학습
- (차) 모의학습법
- (카) 브레인스토밍

2) 자율관리어업의 교수학습방법

▷ 어업인과정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전체적으로는 실기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자율관리어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구체적 지식이나 인식, 태도 등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것을 그 특징.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재에 제시되는 지식을 교육대상자들이 그들 나름의 관련경험을 부단히 회상하여 구체적 지식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확신과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본교과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강의법이 중심이 되겠지만, 강사는 강의법에 의해 교재상의 내용에 대한 요점만을 시청각 교재 등을 활용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Buzz식의 지정문답법에 의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체험교과 가운데 「시청각교과」의 운영은 시청각시간이 외의 시간은 Buzz식 토의법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토의 및 발표」는 Buzz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되, 토의 진행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발견학습에 의해 회의진행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기본교과의 운영은 역시 강의법이 중심이 되겠지만, 문제해결법에 의한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며, 체험교과는 문제해결법이나 Buzz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공무원과정

기본교과는 강의법과 문답법(시간당 10분 정도)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며, 체험교과의 진행은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한다.

▷ 강사육성과정

기본교과는 강의법과 문답법을 대등하게 병용하여 진행하며, 특히 「회의진행방법」 및 「어업인의 인터넷」은 모의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법 위주로 진행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의 개요 및 교과목 편성

(1) 어선어업과정

본문참조.

(2) 혼합형어업과정

본문참조

(3) 양식업 과정

본문참조

(4)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본문참조

(5) 공무원과정

본문참조

(6) 연찬과정

본문참조

(7) 강사육성과정

수산경제기반과 어업제도기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교육훈련 개요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해서는 본문을 참조

4. 교육 예산

가. 2004년 하반기 예산

(1) 총 예산

시설비는 각 교육기관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할 때, 총 451,045천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어업인 교육대상자는 어촌계 단위가 아니고, 우선은 2004년까지 선정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74개를 대상으로 각 공동체별로 4명씩 선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2) 항목별 교육과정별 예산

항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LCD TV, 컴퓨터 등	-	기존 시설 활용	
교재개발비	교재집필, VTR 편집 등	235,000		
운영비	어업인	강사료, 교재인쇄, 숙식비 등	174,825	
	어업인단체	"	1,460	
	공무원	"	9,960	교육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연찬회	"	14,300	
	강사육성	"	15,500	
합계		451,045		

나. 2005년 예산

(1) 총 예산

전국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 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할 때, 총 예산은 759,67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항목별 교육과정별 예산

항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LCD TV, 컴퓨터 등	-	기존 시설 활용	
교재개발비	교재집필, VTR 편집 등	-	기 개발	
운영비	어업인	강사료, 교재인쇄, 숙식비 등	647,500	
	어업인단체	"	40,400	
	공무원	"	19,920	교육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연찬회	"	28,600	
	강사육성	"	23,250	
합계		759,670		

제5장 교재개발

1. 교재개발상의 기본방침

가. 수산소양 교과목 교재

- 어업과 관련하여 시사성이 큰 사실의 내용 설명을 중심으로 함
- 교육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의 서술
- 내용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에 비중을 둠
- 1시간당 교재내용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6페이지 정도
- 내용 가운데 그림이 30% 정도가 되도록 분량을 구성

나. 기본 교과목 교재

- 교재내용의 수준은 고등학교 저학년
-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원리나 인과관계의 설명에 중점을 둠
- 가능한 한 실제적인 자료나 사실을 예시하여 현실감있게 설명하도록 함
- 1시간당 교재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8페이지 정도
- 내용 가운데 표나 그림이 20% 정도가 되도록 분량을 구성
- 단원마다 마지막 부분에 10분 정도 토의할 내용을 2 - 3개 제시
- 활자체 크기는 15포인트 정도로 하고, 줄간격은 180% 이상으로 함

다. 토의식 교과목의 교재

- 특정 이슈에 관해 교육대상자 스스로 토의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
- 여러 형태의 회의방식에 대한 설명과 각각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
- 교육대상자가 이를 통해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구체화될 것

라. 시청각 교재

- 현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도록 할 것
- 단위 내용은 25분 -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

- 가능한 한 어업관리 여부에 따른 상반된 결과의 자료를 대비하여 수록함
- 비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담고 있도록 할 것
- 외국의 시청각 교재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함

2. 교과목의 종류

가. 수산소양 교과목

- WTO체제와 우리 어업
- UN해양법체제가 우리 어업에 미친 영향
-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주장
- 포경어업은 재개될 것인가
- TAC에 의한 어업관리란
- 불법어업의 유형과 그 폐단
- 북한의 수산업 실태
-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실태
- 해양레저활동과 어업
- 수산행정의 이해
- 수협계통조직의 이해

나. 기본교과 교과목

과목명	교육과정				
	어업인	어업인단체	공무원	강사육성	연찬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	○	○	○	○
수산경제의 특성		○	○	○	
어촌 및 어가경영의 이해			○	○	
수산물시장 및 유통	○	○	○	○	
어업관리의 목표와 정책수단			○	○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	○		○	
어업권제도의 이해	○	○		○	
어업관리제도의 이해	○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		○		○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			○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			○	
어업인의 인터넷	○			○	
실기교육방법				○	
회의진행방법				○	

다. 체험교육 교과목

-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발표 및 토의)
- 어업관리의 사례(시청각교육)

3. 교과목별 교재의 주요내용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제6장 자율관리어업 교육 활성화 방안

제6장 자율관리어업 교육 활성화 방안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수공동체」 선발 및 시상이나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우수공동체」 선발사업에 있어서는 자칫 시상만을 노린 공동체를 양산하게 되는 등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킬 우려도 있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어촌계 등에 대해서 지도자급 어업인의 교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2단계의 교육이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제2단계의 교육은, 제1단계의 그것이 자율관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이는 특정 어업인단체에 대해 부정기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현장에서의 방문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단계의 교육은 해양수산부 등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겠지만, 제2단계의 교육은 시·도나 시·군 등으로 교육의 주체를 하향이동시켜 나가고, 또한 지역별로 조직되는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언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6
제2장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27
1.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및 추진경위	27
2.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수단	31
3.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목표	35
4.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40
제3장 교육과정의 설정	43
1. 여타 목표지향성 교육프로그램	43
2. 교육대상자의 구분	75
3. 교육과정별 구체적 목표 설정	77
4. 교육과정 운영체계	79
제4장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81
1. 단위교육대상자의 구성	81
2. 교육행정	87
3. 교과과정	95
4. 교육 예산	107
제5장 교재개발	113
1. 교재개발상의 기본방침	113
2. 교과목의 종류	114
3. 교과목별 교재의 주요내용	117
제6장 자율관리어업 교육 활성화 방안	142
참고문헌	143

제1장 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어업은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의 여건이란 어장 및 자원의 여건, 노동력 수급 여건, 그리고 시장적 여건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육성되어 온 주요 근해업종에 있어서 어장의 외연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게 된 시기가 1980년대 후반으로, 당시까지 자원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어장의 확대에 의해 극복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자원 감소의 영향이 그대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 무렵부터 중국의 어업발달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어업의 생산성은 한층 급속히 저하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밀어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 진전은 노동쟁의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이에 따른 사회기저층들의 인건비 상승을 촉발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수보다는 근로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소위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이 야기되고, 이것은 곧 바로 어업의 인력난으로,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로교통망의 정비 등에 따라 수산물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수산물의 소비가 증대되고 또한 고급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공급이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수산물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연한 일로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증대되기 시작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수산업은 이상의 3가지 악재가 겹치게 됨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장이 축소되고, FTA협정이나 WTO체제에 따른 보조금의 중단 등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업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태는 도탄에 빠진 어업인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지면서, 최근 어업질서가 우려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율관리어업인데,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규제의 범위내에서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리규칙을 정하여 협동에 의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질서확립이나 경영의 수익성에 대한 정부측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인들로서도 자원의 유지·증대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어획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어업경비의 절감과 어획물 가격 제고 등을 통하여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이 정책의 목표에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리규칙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리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은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관련어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역의 어업실정에 적합한 관리규칙을 도출해 내는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관련 정보를 구체화된 형태로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바로 지역어업인들이며, 관리규칙의 적합성 여하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 역시 지역어업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궁리한다면,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리규칙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적의 관리규칙 도출은 한번의 시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관리규칙의 제정과 어업으로의 적용, 그리고 관리규칙의 개선이라는 부단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뒤에라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련어업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생산활동에 있어서 관리규칙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련어업인의 협동은 또한 관리의 효과를 어업인 스스로 체득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율관리어업은 한번 시작되어 그 효과를 어업인들이 경험한다면, 더욱 더 어업인들의 협동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다시 자율관리어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게 된다고 하는 확산적인 성격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작단계에서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며, 현실의 어업인들을 생각할 때, 어업인 의식개혁 내지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육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식개혁 내지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어업인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으로 이행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업인 단체의 직원과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이해시키고 또한 인식 내지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먼저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지향하여 각각의 교육대상자별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설정과 시행계획, 교재개발로 크게 구분하고, 교육과정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운영지침을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시행계획은 단위교육의 대상자 구성방법과 교육시행의 체계 및 교육행정, 교과과정, 예산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재개발상의 기본방침을 설정한 다음,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별로 교재에 수록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목차로써 나타내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어업인 등에 대해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열기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타의 관련교육에 있어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1.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및 추진경위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1년 수산정책발전기획단에 의해 「자율관리형어업」으로 제안되고,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관리형어업」과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던 것이, 2002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으로 명칭이 일원화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나 연구계 혹은 행정에서 그 개념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수산정책발전기획단에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정부 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체계는 다양한 지역적·어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며,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¹⁾」이라 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에 즈음하여 「어장관리·자원관리·생산관리에 있어 어업인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어업인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내 어업인간 합의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²⁾」고 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어촌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어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활동³⁾」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러한 정의 내지 개념규정은 「자율관리」라는 사전적인 용어의 해석에 불과할 뿐, 우리나라어업이 지향할 새로운 어업의 존립양식으로 「자율관리어업」의 내실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수산회 연구보고서에서 자율관리어업과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비교되고 있는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과 서구의 협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발전기획단, 「자율관리형어업 실시방안」, 2001년

2)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2001년

3)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 2003년, p14

동적관리(Co-management)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하에서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 수산청은 자원관리형어업에 대해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의한 안정된 어업을 지향하면서도, 과잉어획노력과 경쟁에 기인하여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어업계가 희망하는 어업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어업활동상 여러가지 인내를 하고, 또한 자기부담에 의해 현재의 상태보다 큰 수익과 안정을 얻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자원관리형어업이 비록 「자원관리형」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는 자원관리형어업의 전제 내지 기본일 뿐,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수익의 증대와 안정을 통한 경영의 유지·확보에 있으며, 그 방법은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과잉어획노력이나 과당어획경쟁의 해소에 있다는 것이다.

과잉어획노력이나 과당경쟁의 해소를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한 것은 여태까지의 어업제도나 행정주도의 관리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어업의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의 증대 및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업인의 일체화되고 또한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서 찾으려 한 일이었다.

원래 제도란 경직성과 강제성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주도의 관리란 일률적인 기준과 공평성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업 여건의 변화나 지역적 특성이 어업관리에 감안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도 내지 관리기준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한 정도로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 여건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어업관리방식은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관리의 내용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내포하고 있는 어업의 양식이 바로 자원관리형어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의 이행은 관련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한 참여는 이를 통한 어업인 공동의 노력에 의해 관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심화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순환논리적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관리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이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고민해 보고 또한 관리효과를 체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도나 행정에 의한 타율적 규제는

4) 수산청 연구부, 「자원관리형어업으로의 이행에 대해서」, 1983년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업관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의 탓으로 미루는 경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어업경영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관리형어업이란 본질적으로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를 내포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업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의 전환 즉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며,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서구의 협동적관리는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 분담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간에 어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주체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어업관리체계라고 하고 있다.⁵⁾

그러나 협동적관리에서 나타나는 어업인의 관리에 대한 참여를 자율관리어업에서의 어업인에 의한 자율적관리와 대비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현저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서구에 있어서는 자원에 대한 이용은 본래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위에서 어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업인은 불특정하며, 이들에게 자원관리에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일은 종래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기조차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업의 산업화 이후 면허·허가제도에 의해 어업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면허·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화되어 있으므로 어업인(어업인 단체를 포함)에 대해 어업관리의 책임을 정부와 분담케 한다든지, 혹은 이들을 어업관리에 참여시키는 일은 당연시되어 왔던 일이었다. 즉 협동적관리란 우리나라 면허·허가제도속에 이미 내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면허어업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허가어업에 있어서도 관리규칙의 신설이나 변경시 어업인측의 요구나 주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수협법이 수산관련법령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할 정도로 어업인 단체가 어업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우리나라 어업관리제도도 어업인에게 관리에 대한 참여의 길은 열어두고 있다고 할 지언정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반문한다면, 수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각종 통계보고의 의무화는 일종의 관리비용 분

5) 해양수산부, 3)의 전개서, p17

담이며, 수협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보조적 기능 역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어업인의 상호협력과 현재 추진 중인 자율관리어업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하는 일 자체가 자율관리어업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며, 행여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론된 것이라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은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그 역사가 일천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을 도출해 내고 정형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자율관리어업의 실천사례는 많이 늘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례를 발굴해 내고, 우리 어업실태에 적합한 것으로 정형화하는 일이 학계나 연구자의 과제라고 한다면,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며, 확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 등이 정부 내지 행정의 과제라 생각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의 규칙을 여건의 변화에 조응해서 탄력적으로 정하고, 이들 규칙을 공동체적 협동에 의해 준수함으로써 최대의 어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단체적 어업관리를 내포한 어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관련어업인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협력에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어업실정에 적합한 자율적 규칙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경제적 이익의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이 자율관리어업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율관리를 실천해 보는 것 이상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은 없다.

흔히 자원관리형어업이나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이행을 어업인 의식개혁운동과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어업인 스스로 더욱더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가속화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실현을 위한 불씨를 당겨놓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일은 어업인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그 효과를 체득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기 까지에는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2.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수단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관리의 방식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어업이 추구해 가야 할 어업의 존립양식에 관한 것이며, 이를 「자율관리어업」이라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산정책이 수산업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정책은 방향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 하위의 각종 정책수단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그러한 정책의 존재의의마저 부정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통해 수산업에 기대하는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수산업이 갖는 존립의의는 ①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②생산의 효율화, ③어업인 소득 및 복지의 향상이라는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은 수산업의 일차적인 역할이며, 수산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생산의 효율화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수산업에 부여된 과제이다. 수산업이라고 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율이 낮은 생산요소의 투입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소의 자본과 노동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린다고 하는 효율성의 원칙이 수산업에도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어업인 소득 및 복지의 향상이란 어업인이 다른 산업의 종사자와 대등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업간·지역간 소득수준의 격차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확보할 수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산정책의 목표이다.

최근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종래와 같은 어업의 방식으로는 전술한 수산업의 3가지 역할 가운데 어느 것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존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통해 수산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치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0년대 들어서 수산물 수입 증대에 따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EEZ체제의 확산과 관련하여 원양 및 근

해어장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하는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EEZ수역내 수산자원의 양적·질적 저하라고 생각된다. 수산물의 양적 감소는 과도한 어획에도 기인하지만, 해황의 변동이나 해양오염, 연안의 산란·성육장 파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인위적인 단기간의 노력으로 자원수준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들 수산자원의 많은 부분을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어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획을 줄임으로써 자원수준을 회복시키는 등 어업부문의 자체적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EEZ수역내 수산자원의 증대를 통해 생산 및 공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점은 수산자원의 질적 개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어획물의 질적 개선은 어업부문의 자구적 노력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 매우 많다. 동일한 어획물이라 하더라도 어획과정에서부터 최종 출하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성들여 품질관리를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품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품질의 차이에 대한 소비층의 평가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업인들에 의한 어획물 품질관리는 어획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어업인의 협동적 조업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협동은 자율관리어업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어획물 품질관리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급상태를 고려한 어획 및 출하를 통해 가격의 제고 및 안정을 기하는 일이라든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어획물 가공 등도 어업인간의 협동적 조업, 즉 자율관리어업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는 양적 기준에 의한 자급률이 아니라 질적 기준 내지 가치기준에 의한 자급률로써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급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산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어획고에 대한 어업총비용의 비율(이하 어업경비율이라 한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하된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적정보수를 산정하고, 예상어획고를 추정함으로써 적정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업경비율의 표준, 즉 목표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고비용구조라는 것이며, 그것의 상당부분은 경쟁적 조업방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개의 경영체들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각각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어획경쟁을

의식하여 과잉투자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노동에 비해 과도한 물적수단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다시 생력화를 위한 투자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고비용 구조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감척사업은 일면에 있어서 고비용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업인에 있어서 조업상의 경쟁의식이 만연해 있다면, 그러한 긍정적 효과는 발현될 수 없다. 한계생산이 거의 0에 가까운 투자도 어업인간의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는 왕왕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자원 및 어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조업방법이나 물적수단에 관한 자체규정을 정하고 다 같이 이를 이행할 때라야 만이 어업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개별어업자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업경비율을 저하시켜서 생산의 효율화와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적정보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소득 및 복지의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어업인의 소득이 다른 산업부문 종사자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키며, 최소한의 여가시간이나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현재 어업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소득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업인 소득 증대는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사안이다. 한편 소득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소득 실현이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연령계층을 비교대상으로 한 소득균형이 목표이며,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어업인구의 구조를 시정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정책의 중요한 목표로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업소득 증대는 품질관리나 부가가치 증대 등 시장대응적 생산을 통한 수익증대와 어업경비의 절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의 증대나 어장환경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도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소득 증대 만으로써 균형소득을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유희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개별어가나 개별경영의 단위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지역단위로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어업인 집단을 단위로 추진되어야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관련어업인들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업인들로 하여금 협력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의식개혁운동의 場으로서 자율관리어업의 이행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업인의 고령화 현상은 젊은 어업인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데, 젊은 노동인구가 어업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업노동의 특성이나 어업인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보다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이 소위 「3D」 업종으로 여겨지게 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도가 큰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되는 이유는 어업노동이 「3D」에 해당하는 요소를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은 어업노동이 갖는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획경쟁에 의해 유발되는 측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장 내지 자원의 선점을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항해야 된다고나 또는 남들이 귀항하고 난 다음에야 귀항해야 된다는 등의 강박관념, 어기 동안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남들이 출어하면 자신도 출어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거나, 몸이 아프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조업에 임해야 하고, 어획과정에서 무리하게 노동을 강행하는 일 등, 어획경쟁은 경우에 따라서 비인간적인 자기착취를 감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노동강도나 여가시간의 비예측성, 조업상의 위험성 등은 어업인간의 어획경쟁에 따라 일층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젊은이들의 취업기피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어업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어업 내지 어촌의 활력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을 편안하고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상호간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업의 방식이 바로 자율관리어업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정책은 생산의 과정에서 어업인간의 협동을 촉구함으로써 첫째, 가치적 측면에서 수산물의 자급률 제고, 둘째, 어업경비의 절감, 셋째, 젊은이들의 참여를 통한 어업의 활력화에 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자유통리어업 교육의 목표

자유통리어업은 수산물 자급률의 제고, 생산의 효율화, 어업의 활력화라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업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하고 궁리하는 합리적인 어업인으로서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종래의 어업인들은 어업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천직으로서 여기며 이에 종사해 왔고,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는 2·3차 산업으로의 직업 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업인들이 기저층에 침전되는 형태로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위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어업은 후계자를 거의 상실한 채로 고령화의 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는 형태로 연안어업에서는 여성 어업인의 비율이 크게 증대되었다.

현재 어업인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스스로를 어업에 침전된 계층이라 여기며, 어업에 대해 자식들에게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며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수동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로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들 어업인에 있어서 수산자원이나 어장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배려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이용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나 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의타심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직업관이나 어장 및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발전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간의 정부주도적 수산정책이 그러한 성격을 고착시켜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중앙행정에 의해 일체의 수산업을 규율하는 일률적인 수산관계법령이 제정되고, 지방행정은 물론 어업인 단체나 개개 어업인의 관리활동 및 생산활동에 대해 이를 상명하달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예하조직이나 어업인 등에 대해 수산정책이나 어업관리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허·허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산업적 가치가 큰 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행정이 어업인 가운데에서 직접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면허·허가함으로써 다수의 어업인들에 대해 수산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을 단순히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제한으로서만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어업인은 어업관리에 대한 타율적·소극적 의식과 행정에 대한 의타적 자세가 체질화됨으로써 어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어업인 간에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내부적 측면에도 큰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개 어업인 스스로가 침전된 계층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어업인에 대해 신뢰감이나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을 동료로서 인식하여 어업에 관한 일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동일한 수산자원이나 어장을 경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쟁상대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편, 어업관리는 관련성이 있는 어업인들이 일체가 되어 행동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개개 어업인간에 협의나 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에서 개개 어업인이 자신의 어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궁리해 내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무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되풀이될 때, 그러한 노력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종에 있어서 어떠한 어업관리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 일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한 해답을 찾아내는 가능성은 당해어업인들로부터만 구할 수 있다. 그것도 개개 어업인에게서가 아니라 관련어업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동에 의해 부단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어업의 현실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각 지역·각 업종마다 적합한 어업관리방식을 발견해 내고, 또한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어업에 있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율관리어업은 그 성격상 주체의 의식 변화가 절대적인 요건이다.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주변적 주체로서 어업인 단체와 관련 공무원의 의식 및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심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첫째, 어업인들로 하여금 직업에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건전한 경영의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어업, 나아가서는 지역의 어업 발전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게 될 때라야 비로소 다른 어업자에 대해 신뢰하고 의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인식하게 되고, 협동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시키고,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어업에 있어서 어업인간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생산 및 어획물 판매 등의 제 측면에 있어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어업의 방식인데, 이러한 어업인의 대응은 관련어업인들의 협동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때라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업인간의 개별적·경쟁적 활동이 어업에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이해시키고, 협동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셋째, 현행 어업관리제도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어업인들은 어업제도에 대해 이를 외부적인 강제로서만 생각하여 막연하게 부정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각종의 수산정책이나 행정의 지도·교육 등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고,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인식하는 등, 스스로를 제도의외적 존재나 정책 관심 밖의 존재로 자리매김시켜 버림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율관리어업이라 하여 어업제도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어업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어업인의 자율성을 확대·회복시켜 주는 한편에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나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수 있다. 어업인들이 생산활동중에 실제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행 어업제도에 관해 필요성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역 어업인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의 협동적인 노력에 의해 전체의 몫을 증대시키고, 이로써 개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복리 증진을 기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의 시행과정에서 개개 어업인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분배받게 된다거나, 다른 어업인에 비해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자율관리어업은 실현되기 어렵다. 전체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므로 당분간의 자기희생을 전체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역어업인이나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및 동료 어업인들과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 어업인단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항을 목표로 교육한다.

첫째로 어업인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함께 수산업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 단체가 수산업 내지 소속어업인의 발전에 있어서 수행할 본연의 역할과 그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해시키고, 어업인 단체의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한다.

둘째로 어업인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각각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어업인 단체의 사업은 크게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금융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지도사업이 중심적인 사업이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의 사업이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업인 단체의 운영실태를 본다면, 수익사업에 기능이 편중되어 지도사업이 주변적인 사업으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어업인 단체가 어업인들로부터 외면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어업인 단체의 직원들로서는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생각된다. 어업인 단체의 주체인 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의 관련성과 의의를 인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어업현장과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친숙한 직원이 되도록 한다.

어업인 단체의 직원은 사무적인 업무보다 어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관찰하면서 어업인들의 고충이나 애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어업인 개개인의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당정도 파악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교육해야 한다.

첫째로 어업인의 생산현장에서 얻어진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어떠한 어업관리방식이 적합한 것인지는 지역 마다의 어업사정이 제각기 다른 만큼 차별적이어서 당해지역의 어업인들 만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내의 일반적·평균적인 어

업사정을 대략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한 어업관리방식을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지역 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이 되며, 또한 어업인이 생산현장에서 체득한 지혜를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지역 마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어업의 방식이 바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산행정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어업인의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물량행정이 아니라 지도행정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수산행정은 대부분이 실물에 대한 것 또는 양으로 측정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심인데, 이들에 관한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공무원이 능력자로 인정된다. 그리고 물량의 배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사업의 통일성·규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지역 마다의 특수한 사정이 무시된다거나, 혹은 특수성있는 대책이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저하가 초래된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나 배분 위주의 행정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비록 적은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행정 본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표면적인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입각한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공무원으로서의 그러한 소신은 지역의 어업사정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4.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특성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어업인 등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다.

어업인에 대해서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건전한 경영의욕을 갖도록 하고, 동료어업인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초로 생산과정에서 협동하는 것이 자신의 어업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한편, 제도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고양시켜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교육이다.

한편 어업인단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어업인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소속 어업인들의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게 기능하는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생산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상의 고충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점들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사명감과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먼저 제도의 시행이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생산현장에서 습득한 지혜를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무사안일형의 행정이 아니라 어업실태의 면밀한 파악에 기초한 소신행정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특수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다.

어업인 등에 대해 의식을 개혁하는 일도 어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 경영기법에 등에 대해 어업인 등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어업관리방식은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내포된 문제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어업제도에 관한 교과목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완화하고,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산자원에 관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망목제한이나 금어기·금어구 등의 규제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게 되고, 치어의 포획이나 산란기의 성어 포획을 자제하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의식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나 관련 사례 등을 통한 확인을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전문교육이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실기교육이다.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어업에 관한 이론적 전문지식을 단순히 사고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나 실습을 통한 피교육자 자신의 부단한 확인 및 숙달과정

을 거쳐서 비로소 습득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 실기교육이다. 물론 기술교육과 같이 교과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실험이나 실습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이나 실습 대신에 이론적 지식을 피교육자 자신의 어업에 관한 경험에 비추어 봄으로써 부단히 확인하게 되고, 혹은 관련사례나 다른 피교육자의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습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교육과 마찬가지로 실기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첫째로, 어업인 등에 대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우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등의 의식개혁이 전제되는데, 그러한 의식개혁은 어업에 관한 이론적 지식의 자각을 통해 스스로 이루어내도록 되는 것이지만,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적극적이고 진지한 것이 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나 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도 일방적인 하달식으로써가 아니라 교육 참여를 정중하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하고, 교육실기 기간에 임박해서는 어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시설이나 숙박시설, 식사 등에 대해서도 검소한 것이되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는 등, 피교육자의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둘째로, 교과목은 어업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로써 편성하며,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한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전문교육이며 전문분야의 지식을 통해 어업인 등의 의식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사성의 교과목이나 교양 내지 취미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은 가능한 배제하도록 한다. 어업인 등의 교육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유발도 전문교과목의 내용이나 교수방법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

또한 어업인 등은 학습교육에 익숙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므로 교과목의 내용은 간단·명료한 것으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보충교재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로, 시청각 교육의 교과목이나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의 교과목 시수를 충분

히 확보한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실기교육이긴 하지만, 실험이나 실습 등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례의 발표나 시청각 교재를 매개로 한 간접경험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교육수행 장소나 교육시기 등은 교육대상자의 편의위주로 탄력적으로 정한다.

주된 교육대상자인 어업인은 생산활동의 특성상 교육을 위한 시간을 자의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교육수행 장소까지의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교육대상자들에 대해 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소요하는 시간과 수고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기 등을 정함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설정

1. 여타 목표지향성 교육프로그램

이하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타의 목표지향성 교육프로그램 및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데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가.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 교육프로그램

(1) 교육목표

- 정부혁신 및 국정개혁의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창의적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

(2) 기본방향

- 공직자가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을 이해·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운영하고 불법어업근절, 자율관리어업 등의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도록 운영함.

(3) 교육프로그램

(가) 내수면양식관리과정

- ①교육목표 : 새로운 내수면 양식기술 습득으로 대어업인 지도능력 배양, 내수면 양식 전문직무수행능력 향상
-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및 시·도 소속 내수면 업무관련 5급 이하 공무원
- ③교육인원 : 35명 (기당인원 : 35명)
- ④교육기간 : 5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30	4	1
비율(%)	100	86	11	3

(나) 수산경영관리과정

- ①교육목표 : 수산기술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무수행능력 제고
-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어촌지도관 또는 어촌지도사
-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29	4	2
비율(%)	100	82	12	6

(다) 수산민원담당자과정

- ①교육목표 : 수산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활용능력 배양
- ②교육대상 : 시·도 소속 5급이하 민원담당공무원
- ③교육인원 : 25명 (기당인원 : 25명)
-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31	2	2
비율(%)	100	88	6	6

(라) 어업질서관리과정

- ①교육목표 : 불법어업 단속관련 법규집행능력 배양,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시·도 소속 어업지도관련 5급이하 공무원

③교육인원 : 45명 (기당인원 : 45명)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32	2	1
비율(%)	100	91	6	3

(마) 어업손실보상실무과정

①교육목표 : 어업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술 습득으로 직무수행 능력배양

②교육대상 : 시·도 소속 어업손실보상 관련업무 담당자(6급 이하)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29	4	2
비율(%)	100	83	11	6

(바) 연근해자원관리과정

①교육목표 :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이해와 수산자원의 보호·이용·개발, 수산관리정책의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시·도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어업인 등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30	4	1
비율(%)	100	86	11	3

(사) 자율관리어업과정

- ①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함양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자율공동체 지도자 육성 및 지도자의 능력 배양
-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및 시·도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수협 등 유관단체관계자, 어업공동체 지도자 및 어업인
- ③교육인원 : 40명 (기당인원 : 4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21	16	4	1
비율(%)	100	67	19	4

(아) 해면양식과정

- ①교육목표 : 해면양식어업의 새로운 기술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 ②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및 시·도 소속 해면양식 업무관련 5급이하 공무원
- ③교육인원 : 40명 (기당인원 : 40명)
- ④교육기간 : 1주(5일, 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35	30	4	1
비율(%)	100	86	11	3

(자) 전업어가어선어업과정

- ①교육목표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수행
- ②교육대상 : 2004년도 선정된 전업어가 중 어선어업 종사자
- ③교육인원 : 100명 (기당인원 : 5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18	18	-	-
비율(%)	100	100	-	-

(차) 전업어가어류양식과정

- ①교육목표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전문이력 육성, 어촌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수행
- ②교육대상 : 2004년 선정된 전업어가 중 어류양식어업 종사자
- ③교육인원 : 40명 (기당인원 : 4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18	18	-	-
비율(%)	100	100	-	-

(카) 전업어가패류양식과정

- ①교육목표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수행
- ②교육대상 : 2004년도 선정된 전업어가 중 패류양식어업 종사자
-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18	18	-	-
비율(%)	100	100	-	-

(타) 전업어가해조류양식과정

- ①교육목표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수행

- ②교육대상 : 2004년도 선정된 전업어가중 해조류양식어업 종사자
-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18	18	-	-
비율(%)	100	100	-	-

(파) 어업인현지방문교육과정

- ①교육목표 :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개발기술의 신속 제공, 현지를 방문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운영
- ②교육대상 : 어업별·품종별 전문교육 희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③교육인원 : 200명 (기당인원 : 200명)
- ④교육기간 : 1~2일, 교육일정은 연중(수시)
- ⑤교과운영 :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세미나, 심포지엄, 연찬회 등의 방법으로 운영)

(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

- ①교육목표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능력 배양, 사업추진 권역별 협조체제구축 및 정보교환
- ②교육대상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할 어촌계장 및 어촌계 임원
- ③교육인원 : 30명 (기당인원 : 30명)
- ④교육기간 : 3일(합숙)
- ⑤교과운영

구 분	계	직무분야	소양분야	기타
시 간	21	18	-	3
비율(%)	100	86	-	14

(4) 교육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이상의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별 전문교육과정이 6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능별 전문교육과정이 4개,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업관리정책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2개,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정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1개, 그리고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방문교육과정이 1개, 합계 14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지방문교육과정은 교육시행방법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목표지향성 교육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4종류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별 전문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의 범위를 5급이하의 공무원(어업손실보상실무과정은 6급이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5일간으로 함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위교육의 규모는 25명 ~ 45명으로 제각각이며,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과시간은 모두 35시간으로, 1일 평균 7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과는 직무분야와 소양분야,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무분야의 교육에 29 ~ 32시간(83% ~ 91%)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직무별 전문교육과정들에 있어서 그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각 교육과정별 단위교육의 규모의 차이는 단순히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과시간의 배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각 교육과정별 차이를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각 교육과정별 특성은 교과목의 구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능별 전문교육과정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자인 어업인을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당해연도에 「전업어가」로 선정된 어업인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점이다. 따라서 이들 교육과정은 「전업어가」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공히 3일간 함축으로 되어 있으며, 교과운영의 시간도 18시간씩으로 1일 평균 7시간으로 짜여져 있고, 교과편성은 직무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 단위교육의 규모는 30명 ~ 30명이며, 4개의 교육과정 가운데 단위교육 규모가 가장 큰 1개만이 연간 2회 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위교육의 규모가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어업인

대상의 전문교육과정에 있어서 각 직능별 전문교육과정의 특성은 교과목의 구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지만, 이들 교육과정이 의식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목의 구성도 공통적인 것이 많고, 또한 전문성보다는 소양교육 쪽으로 근접된 내용의 것이라 생각된다.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공무원 등 어업관련인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정책을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2개의 교육과정은 본 연구의 대상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5급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주된 교육대상인 「연근해자원관리과정」은 그 운영방식이 공무원 대상의 직무별 전문교육과정과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어업인 등이 주된 교육대상으로 되는 「자율관리어업과정」은 어업인 대상의 직능별 전문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면,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의 교육프로그램은 각각의 교육과정이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을 뿐, 교육행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교과목의 구성 외에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1) 교육목표

- 어로장, 항해사 및 기관사 등 해기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을 시킴으로서 수산해양분야의 전문 기술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교육프로그램

(가) 원양과정

- ①교육목표 : 원양어업기술연구소가 개소되면서 어로장, 항해사, 및 기관사 등 원양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훈련된 기술자를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양성.
- ②교육대상 : 어로장, 항해사, 기관사
- ③교육기간 : 1년 6개월(육상 1년, 해상 6개월)

(나) 연근해과정

- ①교육목표 : 연근해어업에 소요되는 항해사, 어로장, 기관사 양성
- ②교육대상 : 일반인
- ③교육기간 및 일정 : 1년(육상 6개월, 해상6개월)

(다) 가다랭이과정

- ①교육목표 : 미개발상태인 가다랭이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간부과정과 일반선원 과정을 통해 해당 기술자를 빠른 시일에 효과적으로 양성
- ②교육대상 : 어로장, 항해사, 기관사(일반선원 과정은 학력에 제한이 없음)
- ③교육기간 및 일정 : 간부과정 ; 1년 6개월(육상 1년, 해상 6개월) ,
일반선원과정 ; 4개월(육상 1개월, 해상 3개월)

(라) 부원과정

- ①교육목표 : 어로의 부원선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갑판 및 기관 전문분야에 걸친 기본적인 어로수행능력을 배양시켜 어업발전에 근간이 되는 어선원을 양성
- ②교육대상 : 일반인(만35세 미만의 신체 건전한 남성)
- ③교육기간 : 2일(선원법시행규칙 제 57조에 의거)
- ④교과운영 : 선상생활의 기초, 생존기술, 선박안전수칙, 선박위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어구취급방법

(마) 해기사과정

- ①교육목표 : 원양어업 및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증대 및 선박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육성
- ②교육대상 : 승선경력은 많으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연근해 선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 ③교육기간 : 6개월(육상 4개월, 해상2개월)
- ④교과운영 : 어업, 선박운항 및 기관운용에 대한 전문과목

(바) 안전 및 해난방지 교육과정

- ①교육목표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해난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비상사태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

- ②교육대상 : 어선선박직원(30톤 미만은 제외)및 원양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갑판장과 조기장
- ③교육기간 : 단기교육
- ④교과운영 : 생존기술, 수색과 구조, 소화방수, 선박위생, 안전관리 및 해사법규 등과 같이 전문과목을 사례중심으로 한 실습위주의 교육

(사) 직무교육 및 요청교육

- ①교육목표 : 선박운항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고급 간부선원들의 직무능률 향상
- ②교육대상 :
 - 원양선 : 원양어선의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 연안선 :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30톤 이상 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200톤급 이상)
- ③교육기간 : 3일

(아) 레이더 관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 ①교육목표 : 레이더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 자동충돌예방장치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
- ②교육대상 : 항해사, 운항사자격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 ③교육기간 및 일정 : 단기교육

(자) 외국인 교육

- ①교육목표 :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통하여 선진수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국위선양과 국제수산교류 증진에 기여
- ②교육대상 : 원양어장과 관련 있는 외국인
- ③교육기간 : 12주(육상좌학 10주, 해상실습 1주, 수산현장 1주)

(3) 교육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개는 제도

에 따른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면허취득을 위한 것으로 그 교육과정은 국제적 규약이나 국내법에 의해 대강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또 다른 1개는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국인 대상의 교육과정이므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3개의 교육과정은 본 연구의 대상과는 다소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고급간부선원들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 외 2개는 안전교육과 선박안전설비의 조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자로 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교육기간도 3일간으로 정해 두고 있지만, 교과목이나 교육시간 등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측의 요구를 받아서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2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정해 두고 있지만, 그 외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측의 요구나 교육담당기관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원양 및 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이 교육대상으로 하는 어업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어업종사자로서 피고용인이고, 후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어업자를 중시므로 한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직업선택의 기회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어업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특화된 정도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업인으로서의 의식개혁이나 인식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의 교육과정을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어업에 대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고급간부선원에 대해서는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실시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교육과정에 이를 다소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원 교육프로그램

(1) 교육목표

- 어업인과 수산제조사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

(2) 교육프로그램

(가) 어민교육

- ①교육목표 :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 및 자기조합에의 참여의식 고양
- ②교육대상 : 조합의 임원, 대의원, 어촌계장, 부녀회장 등 어촌의 여론선도자
- ③교육인원 : 00명
- ④교육기간 : 단기교육

(나) 직원교육

- ①교육목표 : 수협이 영위하고 있는 신용, 경제, 공제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 ②교육대상 : 본회 및 회원조합의 직원
- ③교육인원 : 00명
- ④교육기간 및 일정 : 개별적 실시
- ⑤교육과정 :
 - ㉠직급별 기본교육 고급관리자반 : 중앙회 1급 및 회원조합 별급직원 대상
초급관리자반 : 중앙회 2급 및 회원조합 1급직원 대상
중견직원반 : 중앙회 3급 및 회원조합 2급직원 대상
신입직원반 : 중앙회 및 회원 조합 3급이하 신입직원 대상
 - ㉡직능별 직무교육 : 중앙회 및 회원조합 직원 대상
 - ㉢특별교육 : 기타 연수원장 주관하에 실시하는 교육

(다)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 ①교육목표 : 해상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 직무기술 교육과 안전 조업수칙 및 안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선의 월선, 피랍 방지와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②교육대상 : 원양 및 내수면 어업의 어선을 제외한 연근해 모든 어선의 선주 및 간부선원(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승선예정자중 교육희망자
- ③교육대상 : 00명
- ④교육기간 : 연 1회 4시간 이상(집합 및 순회교육), 교육시기는 성어기 직전(지역별, 업종별 실정을 감안)

(3) 교육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어민교육, 직원교육,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직원교육은 다시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능별 기본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직급별 기본교육은 다시 교육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어민교육과정은 조합원인 어업인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로 교육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그들이 소속한 수협의 사업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목적의 교육과정이다. 단위교육의 규모나 교육시간, 교과목 등이 사전에 짜여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연수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과정은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을 위해 기본적 직무기술과 함께 의식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해 두고 있으며, 교육기간과 시기도 개략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교과내용도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어업인의 편의를 배려하여 교육장소가 가변적이며, 또한 지역별·업종별 생산활동의 시기를 감안하여 교육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교육대상자의 편의에 대한 배려는 노동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직원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이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의 직원에 한정된다. 이 가운데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은 의식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교육기간이나 일정에 있어서 명시된 것은 없지만, 연수원측이 대강의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목의 내용이나 구성은 매년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프로그램

(1) 교육목표

- 국민 정신교육을 통한 단체지도자 육성과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을 실현

(2) 교육프로그램

- (가) 지역사회봉사자교육

①시책연찬과정

- 교육목표
 - 2003년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의 공감대 형성
 - 지역새마을운동의 책임자로서 역할과 자세 확립
 - 사업·조직·재정 등 지역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계기 마련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3회
 - 교육인원 : 1,482명
 -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장단, 사무국장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업무과장(계장)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19	7	1.5	9	1.5	
기본교육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나아갈 방향	1.5	1.5				
	국가발전과 새마을운동	1.5	1.5				
	2003년 중앙회 정책설명	2	2				
소양교육	심신수련강좌	2	2				
사례교육	바람직한 민간자율운동의 정착방안	1.5		1.5			
참여교육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4			4		3회
	화합과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②새마을 기본과정

- 교육목표
 -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본이론 및 지식 습득
 - 새마을운동 조직체계 및 운동방향 이해
 -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 고취 및 일감 숙지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12회

- 교육인원 : 4,716명
- 교육대상 : 리/통 남녀지도자 및 회원, 광역지도자, 기본과정 미 이수자
- 교육중점내용
 - 21세기 환경변화와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 바람직한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쉽 및 정신교육
 - 새마을운동 수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역가꾸기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6	1.5	11	1.5	
기본교육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1.5	1.5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쉽	1.5	1.5				
소양교육	정신교육(예: 참봉사와 인생의 보람)	1.5	1.5				
	심신수련(예: 우리가락 한마당)	1.5	1.5				
사례교육	새마을운동 사례발표	1.5		1.5			
참여교육	다함께 생각하며 (명상/건전가요/대화의 시간)	2			2		2회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4			4		3회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③ 새마을총무과정

- 교육목표
 - 조직관리 및 사업추진 실무능력 배양
 - 새마을운동 조직체계 및 운동방향 이해
 - 핵심 지도자로서의 사명감 및 활동력 고취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12회
 - 교육인원 : 5,079명
 - 교육대상 : 읍·면·동 지역·부녀총무 및 기본과정 이수자
- 교육중점내용

- 읍·면·동 새마을조직 총무의 실무
- 지역사회지도자의 역할 및 사명
- 읍·면·동 총무의 수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읍·면·동 새마을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6	1.5	11	1.5	
기본교육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1.5	1.5				
	읍·면·동 총무의 역할	1.5	1.5				
소양교육	정신교육(예: 참봉사와 인생의 보람)	1.5	1.5				
	심신수련(예: 우리가락 한마당)	1.5	1.5				
사례교육	새마을운동 사례발표	1.5		1.5			
참여교육	다함께 생각하며 (명상/건전가요/대화의 시간)	2			2		2회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4			4		3회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④새마을관리자 과정

- 교육목표
 - 새마을관리자로서의 실무능력 배양 및 리더십 교육
 - 2003년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숙지
 - 지역단위 새마을사업 및 조직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8회
 - 교육인원 : 3,173명
 - 대 상 : 신규 읍·면·동회장, 관리자과정 미 이수자
- 교육중점내용
 - 2003년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이해
 - 바람직한 새마을회장단의 역할 및 정신교육
 - 읍·면·동 회장활동 수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역단위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6	1.5	11	1.5	
기본교육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1.5	1.5				
	새마을회장단의 리더쉽	1.5	1.5				
소양교육	정신교육(예: 참봉사와 인생의 보람)	1.5	1.5				
	심신수련(예: 우리가락 한마당)	1.5	1.5				
사례교육	새마을운동 사례발표	1.5		1.5			
참여교육	다함께 생각하며 (명상/건전가요/대화의 시간)	2			2		2회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4			4		3회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⑤ 독서문화운동과정

- 교육목표

○ 국민독서 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 새마을문고운동의 방향과 문고중앙회 정책과제 이해

○ 새마을문고 책임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1회

○ 교육인원 : 554명

○ 대 상 : 문고운영위원, 분회회장, 문고회원, 이동도서관 직원, 자치센터 임원, 공직자

- 교육중점내용

○ 21세기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 독서회 조직 및 운영기법 이해

○ 독서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

○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9	1.5	8	1.5	
기본교육	새마을문고운동의 방향	1.5	1.5				
	21C 문고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1.5	1.5				
	독서회 조직 및 운영	1.5	1.5				
소양교육	책읽는 사회 만들기운동 외 1	3	3				2회
	심신수련교육(예: 우리가락 한마당)	1.5	1.5				
사례교육	독서문화운동 활성화	1.5		1.5			
참여교육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3			3		2회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⑥수범사례 워크샵과정

- 교육목표
 -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지도자 양성
 -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욕 고취
 - 조직·사업·재정 분야의 전국적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굴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1회
 - 교육인원 : 481명
 - 대 상 : 읍·면·동별 수범사례 남·여지도자, 공직자
- 교육중점내용
 - 21세기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 국가발전과 새마을정신
 -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쉽
 - 수범사례발표 및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야	과목	내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6		12.5	1.5	
기본교육	국가발전과 새마을운동	1.5	1.5				
	21C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1.5	1.5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쉽	1.5	1.5				
소양교육	심신수련교육(예: 우리가락 한마당)	1.5	1.5				
참여교육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분임토의 및 발표	7.5			7.5		4회
	친교의 시간	1.5			1.5		
기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⑦ 프로그램 기획 실무 운동가 과정

- 교육목표

- 2003년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의 이해
- 사업·조직·재정 등 지역사회개발 추진기법 습득
- 일선현장 지역주민운동의 지도·지원의 실무역량 제고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1회
- 교육인원 : 355명
- 교육대상 : 민간단체 및 새마을실무 운동가, 사무국 직원

- 교육중점내용

- 2003년도 새마을운동의 나아갈 방향
-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기획과 실무
-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평가와 매뉴얼
- 일선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정보교환

- 교과운영

분 야	과 목	내 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20	8	1.5	9	1.5	
기본교육	새마을운동과 사회운동의 이해	1.5	1.5				
	프로그램기획 및 추진·평가요령	1.5	1.5				
	효과적인 조직관리와 리더십 배양	1.5	1.5				
	재정자립 프로그램 개발과 회관건립	1.5	1.5				
소양교육	심신수련강좌	2	2				
사례교육	성공적인 지회운영 방안(패널발표)	1.5		1.5			
참여교육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상호인사 및 경험교환	1.5			1.5		
	일선새마을운동 활력화 워크샵	4			4		3회
	화합과 친교의 시간	1.5			1.5		
기 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나) 민주시민교육

①공직자혁신 교육

- 교육목표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정립
-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마인드 제고
- 민·관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필요성 인지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4박5일, 1회
- 교육인원 : 340명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방공무원 훈련평정 대상)

- 교육중점내용

- 한국의 미래상과 공직사회의 혁신과제
- 지방화 시대의 민·관 협력방안
- 국가발전과 새마을운동
- 패널 및 분임토의

- 교과운영

분야	과목	내용(시간)					비고
		계	강의	사례	참여	기타	
계		35	14	2.5	17	1.5	
기본교육	경영마인드를 통한 행정혁신	1.5	1.5				
	한국의 미래상과 공직사회 혁신 외 2	5.5	5.5				3회
소양교육	국가발전과 새마을운동 외 1	3.5	3.5				2회
	정신교육(예: 참 되게 사는 삶)	1.5	1.5				
	심신수련교육(예: 우리가락 한마당)	2	2				
사례교육	지방화 시대의 민·관협력 방안	2.5		2.5			
참여교육	아침을 열며 (기상/아침운동/새마을역사관 견학)	2			2		2회
	분반원과 함께(자치회 구성 등)	1.5			1.5		
	협동체련 및 서바이벌게임	2.5			2.5		
	문화탐방	4			4		
	분임토의 및 발표	5.5			5.5		3회
	단합의 밤	1.5			1.5		
기타	입교식 및 생활안내/ 수료식	1.5				1.5	2회
	점심시간 이용 체육활동 2, 3일차 저녁 자율학습(영화 등)						

② 민간사회안전망 교육

- 교육목표

- 새마을 민안망운동을 통한 지역단위 기초 구호운동의 정착
-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새마을 민안망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 및 추진역량 배양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2박3일, 2회
- 교육인원 : 1,071명
- 교육대상 :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장·임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읍·면·동 지역·부녀회장.

- 교육중점내용

- 새마을운동과 민간사회안전망운동
- 새마을 민안망운동의 추진과제와 기법
- 민안망운동 현장활동 수범사례 발표
- 새마을 민안망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분임토의

- 교과운영(생략)

③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 교육목표
 - 가족간의 사랑을 가꾸어 가는 지혜습득
 - 협동과 단합을 통한 「한마음 한가족」 공동체 체험
- 교육운영계획
 - 교육기간 : 1박2일, 2회
 - 교육인원 : 810명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중 희망자(가족단위 입교, 단, 자녀는 유치원-초등학생 입교 권장)
- 교육중점내용
 -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족 만들기
 -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 부모와 자식의 역할인식 함양
- 교과운영(생략)

(3) 교육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지역사회봉사자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7개 교육과정과 후자의 3개 교육과정을 합하여 총 10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지역사회봉사자교육과정은 새마을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이나 정책을 이해시키며, 추진주체로서의 사명감과 기본자세를 배양하는 한편, 이들의 화합과 단결을 촉구하는 단합대회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7개의 세부교육과정 가운데 민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4개, 그리고 민간 관련자와 공직자를 함께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 3개이다.

교육기간은 7개 교육과정 모두 2박3일이며, 교과시간은 20시간 정도로 되어 있다. 교과목은 크게 「기본」, 「소양」, 「사례」, 「참여」, 「기타」로 구분되는데, 새마을운

동 관련자로서 그들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과목은 「기본」 및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목의 시간은 4.5 ~ 7.5시간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교육대상자간의 화합이나 교양을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단위교육의 규모는 400 ~ 500명 정도이다.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새마을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의식교육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혁신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4박5일로, 교과목의 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대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과목 시간은 9.5시간이다.

마. 일본의 어업인 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와 제반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宮崎(Miyazaki)縣의 宮崎縣立高等水産研修所, 北海道의 北海道立漁業研修所, 大分(Oita)縣의 ‘수산업에 있어서 經營塾’, 全漁連의 全國漁業協同組合學校를 사례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다.

(1) 宮崎縣立高等水産研修所

(가) 교육 및 연수체계

宮崎縣 縣立高等水産研修所의 교육 및 연수체계는 크게 양성부문과 연수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양성부문은 우수한 어업취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연수부문은 수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어업인 등을 재교육시키는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들 교육 및 연수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성 부문	구 분		수업기간	정원	입소자격
		본과	항해코스 기관코스	1개월	15명 정도
전공과	전기	4-9월		8명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 외 학교교육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자
	후기	10-3월		7명 정도	
	단기	2개월		약간명	
연수 부문	연수의 종류		연수의 내용		
	자격취득연수		어업취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		
	선진기술연수		어업취업자에 대한 자원관리, 정보처리, 어업경영 연수		
	국제어업연수		외국인 어업연수생에 대한 어업기술 연수		
	주민어업연수		일반주민, 아동·학생에 대한 연수		

(나) 양성부문

양성부문의 교육목표는 수산업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속에서 縣 수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어업 취업자를 양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다.

양성부문의 교육은 교육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심, 협동심, 책임감을 배양한다. 또한, 전문적인 어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다.

교육내용은 일반 교양과목을 비롯하여 어업에 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항해·기관 및 경영관리, 자원관리 등의 전문과목을 이수한다. 또한 어업실습선, 4급 소형선박 조종사 시험 연습반, 수산시험장 조사선 등에 의한 어업실습, 해양훈련 및 잠수훈련, 용접실습 등을 통해 실천적인 지식·기술을 배양한다. 대표적인 현장교육은 기관실습, 조종시뮬레이터, 항해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다) 연수부분

	종류	연수내용	대상자	정원 (명)	회수 (회)	기간 (일)	비고
자격 취득 연수	2급 소형선박조종사 양성강습	2급 소형선박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기존 어업자	15	1	3	
	1급 소형선박조종사 양성강습	1급 소형선박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15	1	24	
	4급 해상무선통신사 양성강습	4급 해상무선통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20	1	18	
	1급 해상특수무선기사 양성강습	1급 해상특수무선기사 자 격취득을 위한 연수	"	20	1	8	
선진 기술 연수	자원관리강좌	어업정책, 자원관리, 재배 어업, 어장환경 등	"	30	2	2	
	정보처리강좌	컴퓨터를 이용한 수산정 보처리, 인공위성이용시 스템	"	30	2	2	
	어업경영강좌	어업경영분석, 영어계획 (개별), 유통가공	"	30	2	2	
국제 어업 연수	외국인 어업연수	어선운항기술, 어선기관 기기의 취급, 어업기술	외국인 연수생	55	1	10	외국인연수 생을 대상
縣民 어업 연수	해양스포츠강좌	어업관계법규, 해사법령, 해양스포츠체험	일반 縣民	30	1	1	일반縣民을 대상으로 연수
	어업체험연수강좌	수산일반 등		30	1	1	
	숙박체험학습강좌	유아·학생에 대한 해양·어업 체험학습	유아, 학생	30	4	2	

연수부분의 교육대상자는 기존어업인, 외국인연수생, 지역주민, 유아 및 학생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기존 어업인은 어선조정 및 무선기술을 습득하는 자격취득연수, 어업을 경영하는 데에 유용한 어업정책 소개, 컴퓨터 이용실무 등을 교육하는 선진기술연수가 있다. 또한 일정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각종 면허자격도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 가능한 면허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수기간	취득가능한 면허자격 등
본과생	1년 (4월-익년3월)	4급 해상무선통신사, 1급 해상특수무선기사, 5급 해기사필기시험, 2급 소형선박조종사
전공과·前期	6개월 (4월-9월)	4급 해상무선통신사, 1급 해상특수무선기사, 1급 소형선박조종사
전공과·後期	6개월 (10월-익년3월)	4·5급 해기사필기시험(4급, 5급 모두 응시가능), 2급 소형선박조종사
전공과·短期	2개월 (11월 중순-익년1월 중순)	4·5급 해기사필기시험 혹은 필기·구술시험

* 또한, 본과생·전공과 前期生은 잠수훈련·용접실습도 있음

** 필요한 자격면허에 의해 전기·후기·단기의 선택이 가능, 더욱이 전기에서 후기로, 혹은 후기에서 계속하여 전기로 입소하는 것도 가능

그 외에도 외국인 어업연수생 교육과정과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유아 및 학생에게 어업을 체험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2) 北海道道立漁業研修所

(가) 연수의 개요

北海道道立漁業研修所에서는 지역 어업인, 어업인단체, 공무원 등을 위해 종합연수, 어업취업촉진연수, 기르는어업기술연수 등 3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연수는 18세 이상의 어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업취업촉진연수는 어업취업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기르는어업기술연수는 어업취업자, 어협직원, 공무원, 여성부회 회원 등이 주된 교육대상자이다. 2004년도 北海道道立漁業研修所의 연수계획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다.

2004년도 연수계획			
구분	종합연수	어업취업촉진연수	기르는어업기술연수
연수명	종합연수	· 소형선박조종사양성강습 · 잠수사강습 · 해상특수무선기사강습	어촌그룹연수(해양환경, 자원관리, 경영관리, 가공이용, 漁業士, 청년부활동, 여성활동 등타)
연수기간	2004.5.7-10.27. 전기 : 5/7~7/20 후기 : 8/25~10/27		수시개최
연수일수	6개월(139日間)	-	희망일수
정원	50명	-	최대50명
대상자	18세 이상 어업후계자	漁業就業者	어업취업자, 어협직원 市町村직원, 어협청년부·여성부 어업부회 등

(나) 종합연수

종합연수는 장래에 어촌의 지도자가 될 어업후계자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 대해 어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연수로서 취업 후에 필요한 선박조종사 등의 자격취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실천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실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목은 아래와 같다. 연수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며, 연수소에서 전원 숙박을 실시한다.

생활지도	연수기간중의 생활, 규칙 등의 준수
사회교육	집단활동에 의한 협동심 및 지도력의 육성
어업제도	어업에 관련된 각종 관계법령
어협제도	어업협동조합의 지식과 역할, 업무내용
해양환경	해양환경의 기초지식, 해양관측
수산생물	수산생물의 기초지식, 어개류의 측정과 해부, 수산동식물의 분류 등
자원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관리(TAC제도 등 포함)
재배어업	가리비, 다시마, 성게 등의 종묘생산, 중간육성, 양식 등
잠수기술	잠수지식, 관계법령, 잠수실기, 해난훈련 등
선박실기	어선구조, 유지, 관리, 기기취급 등
수산가공	어류 등의 기초가공
어가경영	어가경영의 기초, 컴퓨터의 기본조작, 표계산 등 어가경영에 응용기초
어업기술	어구제작, 어로실습
어업기계	기계류의 기초지식, 취급 등
구급법	심폐소생, 응급기술 등의 구급법 강습

위와 같은 종합연수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소형선박조종사	2급 해상특수무선기사
병종 위험물취급자	을종 제4류 위험물취급자
잠수사(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자격)	소형이동식크레인 운전기능
포크 리프트 운전기능	식품위생책임자

연수일과는 아침 7:00에서 기상을 하여 9:10-12:00까지 오전수업, 13:10-16:00까지 오후수업을 하며, 저녁 23:00에 취침한다.

연수일과									
7:00~ 8:00	8:00~ 9:10	9:10~ 12:00	12:00~ 13:10	13:10~ 16:00	16:00~ 18:00	18:00~	21:00	22:00	23:00
기상 접호	조식 연수준비	연수	중식 휴게시간 연수준비	연수	청소 자습 자유시간	석식 자습 자유시간	폐문	접호	소등 취침

(다) 어업취업촉진연수

어업취업촉진연수는 어업인이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서 전원 합숙을 실시하며, 취득 가능한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격의 종류	자격의 내용	강습구분	수강자격
1급 소형선박 조종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선박)의 선장이 되려는 자가 필요한 자격	제1종 양성강습	①강습개시일 전일에 17세 9개월 이상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자 ②예비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자
		제2종 양성강습 (실기면제)	上記①, ② 외에 다음의 승선경력을 가지는 자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 선박의 조타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전술의 기간(1년 이상)중 총 톤수 5톤 이상의 소형선박에 대해 선박의 조타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잠수사	노동안전위생법에 의 한 국가자격.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필요한 자격	없음	①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국가시험 수험대상이 되는 자 ②강습전에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국가시험 수험신청이 완료 가능한 자 ③만18세 이상인 자
2급 해상 특수무선 기사	무선통신업무 및 레 이더 조작업무에 종 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없음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전과법 제9장의 죄를 짓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 았거나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무선종사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가 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③신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선종사자로 적절치 않은 자

(라) 기르는어업 기술연수

어업인이 자원관리, 재배어업, 어업경영 등에 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과 어촌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있다.

교과내용, 수업방식 등은 어업여건 및 환경의 변화,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등 어업인의 요구에 따라 교육주제가 정해지며, 각 전문가에 의해 강의와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교과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大分県の「경영塾」

(가) 배경 및 목적

1980년대부터 200해리시대의 정착, 지속적인 어획량의 감소, 어업인 후계자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후반에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관리와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한 수산기본법이 성립되었다. 동법 제23조에는 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大分縣에서는 「경영塾」이라는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이러한 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마련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넓은 시야와 유연한 발상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수산업 담당자를 육성하는 데에 있다.

(나) 명칭 및 교육대상자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은 豊後の浜塾(Bungo no hamajyuku)이다. 大分縣은 1986년부터 우수한 어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漁業士강좌를 개설하여, 현재는 青年漁業士와 指導漁業士를 합쳐 120명을 認定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초보 및 중견 어업자를 중심으로 大分縣 漁業士連絡協議會를 발족시켜 어업활동의 핵심으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經營塾」의 수강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대략 55세 이하의 大分縣漁業士連絡協議會 회원이 된다. 한편, 漁家の 경영이나 유통의 개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漁業士의 배우자도 수강대상자로 한다. 교육대상자의 인원은 1期에 20명 정도로, 2期 합쳐 모두 40명으로 한다.

(다) 「經營塾」의 개요

교육기간은 1期당 2년이며, 총 사업비 2,650천円은 국고보조비 1,325천円, 일반재원(縣예산)1,225천円, 그리고 교육생 부담 100천円으로 조달되고 있다.

「經營塾」의 임원구성은 명예塾長(縣지사), 塾長(대학교수), 塾頭(교육생 대표)로 나누어지는데, 교육과정은 다음의 것 가운데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1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강좌명	내용
경영기술론	경영전략, 비용의 중요성, 원가관리 등 강사 : 벤처기업 사장 등
수산유통론	세계의 식품유통, 식량정책, 수산물가격의 형성과정 등 강사 : 대형유통회사 바이어, 외식산업 경영자, 유명 요리사 등
세계정세론	지구규모의 수산자원과 수산물수급, 수산업과 외교 등 강사 : 신문사 논설위원, 저널리스트, 국회의원 등
위기관리론	경영위기의 회피, 돌발화재의 대응 등 강사 : 돌발사고 및 회사재건의 경험자 등
현지연수	국내연수(1년차) 국외연수(2년차)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大分縣漁業士連絡協議會의 經營漁業士(가칭: ‘豊後の浜塾’卒塾生)가 되는데, 연령에 따라 지도어업사(40세 이하), 청년어업사(39세 이하)로 나누어진다. 수료생은 어업경영에 대해 다른 漁業士 혹은 청년·여성 어업자에게 교육하며, 여타의 어업종사자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4) 漁協직원 교육프로그램(全國漁業協同組合學校)

(가) 연혁

우리나라의 수협중앙회 연수원과 교육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41년 10월 전국어업조합연합회 부속 漁業組合學校로 설립하여, 1943년 8월 漁業會學校로 개칭되었고, 1949년 7월에 全國漁業協同組合學校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학교의 특성 및 수업과정

본 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한 어협 계통단체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년한은 1년간이며, 교육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생은 어협이나 漁連에 재직하는 현직자와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졸업한 자 가운데 어협 계통단체에 취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어업 및 어협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곳이다. 강사요원은 대학교수나 중앙단체의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다.

(다) 교과과정

교과목은 어협 직원이나 어업후계자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어협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과목」과 그 기초로서 수산관계의 「기본과목」으로 나누어진다. 2003년도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과목	전문과목
경제개론	어업법
어업사	어업협동조합론
수산정책론	어협신용사업론
수산경제론	어협구매사업론
협동조합론	어협판매사업론
수산물류통론	어협공제보험론
재배어업론	어협부기회계론
어장환경론	수산업협동조합법
부기회계론	어협운영론
법학개론	정보처리

한편, 어업협동조합(漁協)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은 교외학습으로서 여름휴가 중에 1개월간 어협 실습을 하고 있으며, 1박1일 혹은 당일의 현지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 전원이 부기능력검정시험·정보처리능력검정시험·비서능력검정시험(전국경리학교 주최)에 응모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육생은 신용사업업무검정시험(협동세미나 주최)에도 응모할 수 있다.

(5) 일본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우리나라의 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집중적이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 都道府縣별로 마련된 전문교육시설에서 지역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어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 명칭 및 내용도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어업인의 양성/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宮崎縣立高等水産研修所, 北海道立漁業研修所, 静岡縣立漁業高等學園, 青森縣立海洋學院, 佐賀縣高等水産講習所 등이 운영하고 있는데, 각 縣별로 그 명칭이 다르다. 大分縣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에 있어서 經營塾’ 등 지역실정을 감안한 독특한 교육프로그램도 존재하지만, 어업인이 어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들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업인에게 「漁業士」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각 어업인이 영위하고 있는 어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漁業士들이 지역 어업의 진흥, 어업인 단결·협동을 담당하는 중심역할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관리어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업인들에게 일본의 漁業士와 유사한 호칭 내지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이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과 성격이 유사한 자원관리형어업 관련 독립된 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都道府縣별로 어업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업인단체 등의 직원(漁協직원)에 대한 교육은 全漁連(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의 全國漁業協同組合學校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교육대상자의 구분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성격

자율관리어업은 기존의 관 주도형 어업(Top Down)에서 어업인의 자구적인 노력과 규율에 의한 어업(Bottom Up)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형적이고 일률적인 어업관리의 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황, 어업상황 등에 따라 자원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스스로 관리규칙을 정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업과 함께 수익성 확보를 실현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어업의 존립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율관리어업 주체인 어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자율관리어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어업인 등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

나. 교육대상자의 구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추진체계는 우선, 어업인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규약 등을 포함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구성하며, 시·도, 지방수산청, 지구별 수협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에서 자율관리규약을 심의하고 자율관리 참여공동체를 선정하여서, 사업실태의 평가, 개선방안의 협의와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위원단’에서 지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자문함과 동시에 행정·예산·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수행해 나간다.

이상과 같이,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상의 조직들은 그 성격과 역할을 달리하므로 자율관리어업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직 성격별로 교육대상자를 구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율관리어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어업인’, 현지 교육지도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수협계통조직, 자생적 조직인 협회 및 협의회), 행정·예산·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는 3부류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교육대상자별 세분화

(1) 어업인

어업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어업은 업종, 그리고 지역(해역)에 따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일률적인 교과내용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이 성공을 거두어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동일한 업종별로 그리고 지역 간에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현재 자율관리어업이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인들을 업종별로 세분화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교육대상인 어업인이 속한 지역의 주된 어업의 형태를 어선어업(천연의 수산자원을 채포하는 것으로서 정치망도 포함됨, 이하 동일), 양식업(마을어업과 증양식을 포함, 이하 동일), 혼합형어업의(전술한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대등한 정도로 겸영) 3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어업방식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차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는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어업생산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교육, 지도, 조언을 하는 어업인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어업인단체에는 수협계통조직(어촌계는 포함하지 않음)과 자생적 조직인 각종 협회 및 협의회 등이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교육대상자는 생산현장에서 어업인들과 접촉하면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별 수협의 지도과 과장급 이하 직원, 자생적 조직체인 협회 및 협의회 이사 등이 교육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중앙회와 단위수협 조합장 및 간부는 연찬과정, 그리고 지구별 수협 지도과 직원은 강사육성과정의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3) 공무원

행정 측면에서 자율관리어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예산, 제도, 지도 등의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자율관리어업에 관련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군 수산과 등의 직원이 될 것인데, 이들이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및 어업자원국의 계장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 과장 이하, 수산기술관리소 소장 이하, 각 시·도 (해양)수산과 과장 이하가 교육대상자로 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차관(보)과 수산정책국 및 어업자원국 국장·과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각 시·도 고위공무원 등은 연찬과정의 교육대상자로 될 것이며,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지도직 공무원은 강사육성과정의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킨다.

3. 교육과정별 구체적 목표 설정

가. 어업인과정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어업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동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은 장래 어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이해하게 한 다음,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측면에서 의식개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어업활동의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지역별로도 어업의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선어업과정, 양식업과정, 혼합형어업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지역의 어업의 여건이 감안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업인들이 경험을 통해 실천을 쌓아 가면서 자질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단기간의 합숙훈련을 통하여 서로의 협동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어업인과정에서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기본이론 및 효과를 사례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함

- 둘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자 육성 및 사명감 고취
- 셋째,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및 건전한 어촌사회발전 도모

나.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어업인단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잘 결집되도록 역할하고, 어업인 의식개혁을 조장·촉진시킬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를 개발하는 데에 교육프로그램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에서도 단기간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식의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강화
- 둘째, 행정을 대신한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지도 역량 강화
- 셋째, 자율관리공동체의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다. 공무원과정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정부는 어업관리의 주도적 역할에서 자율관리를 지원·조장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공무원과정은 행정적 지원, 지도 등의 측면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의 개발 및 실행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무원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자율관리어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 둘째, 사업, 조직, 재정 등의 추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 배양
- 셋째, 현장의 지도, 지원의 실무역량 제고와 행정서비스 마인드 고취

라. 연찬과정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어업인, 행정, 어업인단체 등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행정 고위직, 어업인단체 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을 통해 자율

관리어업의 바람직한 정책방안, 지역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의 도출 등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연찬의 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찬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

둘째, 자율관리어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세 확립

셋째, 사업, 조직, 재정 등 지역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마. 강사육성과정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어업인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강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어업 사정이나 지역 어업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어업의 문제점을 자율관리어업의 이론을 접목시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업인 등에 대해 실천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의 육성은 초기단계에 있어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인 것이다.

강사육성과정의 교육대상은 지구별수협외의 지도과 직원과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강사육성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첫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과 전문성을 배양

둘째,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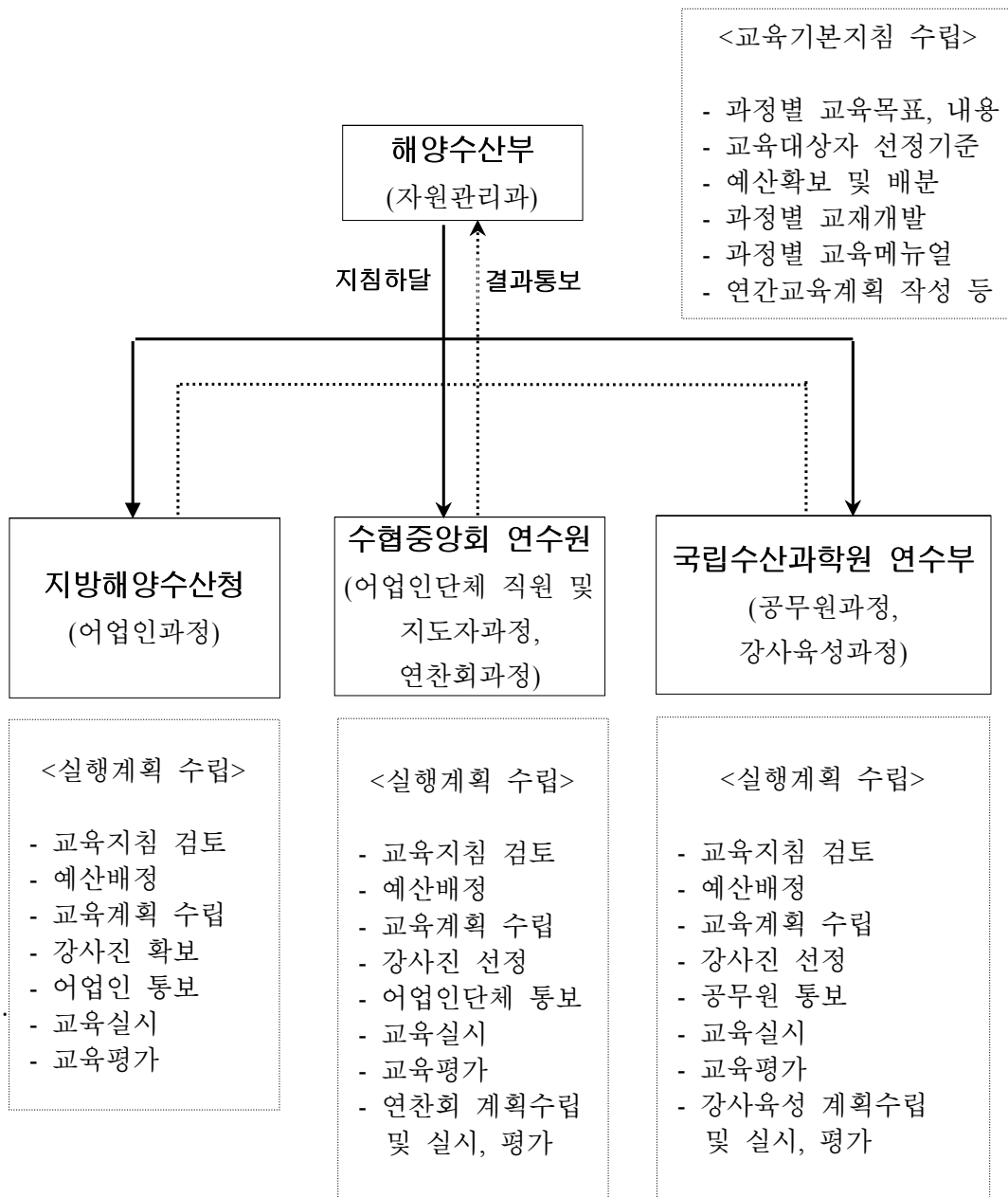
4. 교육과정 운영체제

먼저,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체제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주관부서로서 교육 전반에 대해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담당기관에 하달한다. 기본지침에는 교육과정별 목표,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예산 확보 및 배분, 교재개발, 교육메뉴얼의 수립 등을 포함한 연간교육계획을 확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연수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 등의 교육담당기관에게 통보한다.

각 교육담당기관은 해양수산부의 교육기본지침을 참고하여, 각 교육기관의 실정을 고려하고, 해당 교육대상자 등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계획에는 교육지침 검토, 예산배정, 강사진 선정, 연간교육일정, 교육실시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교육이 끝나면, 각 교육담당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게 보고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교육기관에서 송부된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차년도의 교육기본지침에 이를 반영한다.



제4장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1. 단위교육대상자의 구성

가. 단위교육대상자의 모집단

(1) 어업인

2002년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어촌계가 1,855개, 어촌계원은 147,236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우선적인 교육대상자를 1개 어촌계당 어촌계장, 간사, 부녀회장, 어민후계자 각 1명씩 4명으로 하여 계산하면, 전체 교육대상자는 7,420명이 된다.

다시 이를 소속 어촌계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어선어업 2,092명, 양식업(마을/증양식) 3,292명, 혼합형어업 2,036명으로 된다. 그리고 동해, 서해, 남해의 해역별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할 수도 있다.

종류 지역	어선어업		양식업		혼합형어업		계	
	어촌계	어민	어촌계	어민	어촌계	어민	어촌계	어민
경인	17	1,115	36	4,540	41	4,483	94	10,138
강원	59	5,077	-	-	17	669	76	5,746
충청	17	1,119	36	3,453	38	4,534	91	9,106
전북	41	5,185	9	847	14	1,401	64	7,433
전남	75	6,166	590	40,252	163	12,676	828	59,094
경북	93	6,261	7	287	52	2,621	152	9,169
경남	192	13,242	70	4,402	147	10,396	409	28,040
제주	9	910	74	10,637	17	2,505	100	14,052
부산	20	2,213	1	117	20	2,128	41	4,458
계	523	41,288	823	64,535	509	41,413	1,855	147,236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2년 12월말)

(2)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어업인단체의 경우, 자생적 조직인 어업인 협회 및 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협 만을 한정하여 어업인단체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해 보았다.

수협 직원 가운데에서 자율관리어업의 교육대상자는 중앙회 및 지구별 조합의 교

육·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과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해당될 것이다. 지구별, 업종별 수협은 모두 94개가 있으며, 이들 수협의 지도과 담당직원 2-3명씩을 교육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대상자수는 188-282명 정도가 된다. 여기에 수협중앙회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0여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대상자는 198-292명 정도가 된다.

단위수협		수협의 수(개)	수협 임직원 수(명)	
지구별수협	부 산	2	중앙회	1,966
	인 천	4	회원조합	4,900
	강원도	9		
	경기도	1		
	경 남	13		
	경 북	8		
	전 남	17		
	전 북	4		
	제주도	6		
	충 남	8		
	울 산	1		
	소 계	73		
업종별수협		21		
제조업수협		2		
합 계		96	합 계	6,966

(3) 관련공무원

자율관리어업 교육대상인 공무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과 수산정책국 계장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 과장 이하 및 수산기술관리소 소장 이하, 그리고 각 광역시·도 및 시·군의 (해양)수산과 과장 이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인 교육담당기관이면서 동시에 공무원과정,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방해양수산청의 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1급이상	2, 3급	3, 4급	4, 5급	6급이하
부산청	189	-	2	8	28	151
인천청	262	-	2	10	24	226
여수청	251	-	1	2	12	236
마산청	193	-	1	1	14	177
울산청	114	-	1	-	8	105
동해청	123	-	-	1	9	113
군산청	146	-	-	1	11	134

목포청	232	-	-	2	16	214
포항청	164	-	-	1	12	151
제주청	98	-	-	1	8	89
평택청	46	-	-	-	5	41
대산청	95	-	-	2	5	88
합계	1,913		7	29	152	1,725

관련공무원의 교육대상자수는 전체 247명으로 추산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국 및 어업자원국의 10개과에 대해 1개과당 교육대상자를 2명으로 계산할 때, 20명이 된다.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은 수산관리과 및 수산기술관리소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각 3명으로 계산할 때, 36명이 된다. 그리고 15개 시·도의 수산과에서 각 3명을 선발하면 45명, 전국 해안에 면해 있는 73여개의 시·군에 대해서 2명씩 선발하면 146여명이 된다.

나. 교육대상자의 구성방안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시행할 담당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은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교육 성격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구성은 원칙적으로 어업인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한다.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의 교육대상자 구성은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공무원과정에 대한 것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가 각각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연찬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도록 한다.

(1) 어업인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인 교육대상자는 그들이 속한 어촌계의 어업형태에 따라 어선어업, 양식업, 혼합형어업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단위교육의 교육생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1개 어촌계로부터의 교육대상자 4명씩을 선발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업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어업인대상의 교육은 실기 위주의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참여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사와 교육생, 교육생 상호간 밀착된 교육여건의 조성이 중요한 것이므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25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어업인과정의 교육을 시행하게 될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어업인과정 교육대상자의 수 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지방해양수산청	교육대상자 (어촌계수 / 대상자수)			
	계	어선어업	양식업	복합어업
인천청	55/220	16/64	25/100	14/56
평택청	47/188	1/4	11/44	35/140
동해청	76/304	59/236	0/0	17/68
포항청	152/608	112/448	8/32	32/128
대산청	83/332	19/76	36/144	28/112
군산청	64/256	40/160	10/40	14/56
목포청	487/1,948	51/204	365/1460	71/284
여수청	365/1,460	32/128	227/908	106/424
울산청	33/132	20/80	0/0	13/52
부산청	41/164	19/76	1/4	21/84
마산청	3,76/1504	171/684	70/280	135/540
제주청	100/400	13/52	72/288	15/60

(2)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공무원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이나 공무원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실기교육의 중요성이 크므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를 소규모로 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교육대상자의 학력수준이나 학습능력이 대체로 균일하며,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어업인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행정적인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4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구성은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자의 모집단 구성비율과 유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에 있어서는 소속 수협 등의 종류별로 교육대상자의 수가 안분되도록 하는 데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과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성격별로(중앙·광역시 및 도·시 및 군 등) 교육대상자의 수가 안분되도록 한다.

(3) 연찬과정

자율관리어업관련 연찬회는 3급 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단위수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수협중앙회 부장급 이상, 어업지도자, 기타 유관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년 2회 개최한다.

연찬과정은 어업에 관한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므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대상자의 수는 10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강사육성과정

강사육성과정은 강의식과 참여식을 거의 대등하게 병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심화된 교과내용 및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밀도있는 교육을 위해서 단위교육의 교육대상자 수는 25명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속기관이나 지역별 배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어업 교육 기본지침으로써 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연수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에 각각 하달하면, 각 교육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정하여 교육실행계획에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1) 어업인과정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어업인과정의 연간 교육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 교육대상자 수요인원을 파악한 다음, 관할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교육내용 및 일정을 홍보하고 어촌계 단위로 교육의 신청을 받는다.

교육대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자율관리어업의 모범어촌계와 그렇지 않은 어촌계의 소속 어업인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신청 어업인이 많을 경우, 자율관리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어촌계 소속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촌계내에 교육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촌계로 하여금 젊고 의욕적인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유도한다.

(2)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는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협 등의 종류별로 교육대상자 수요인원을 파악하고, 관련 수협 등에게 교육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공지한 다음 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율관리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율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어촌계를 관할구역내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협의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

(3) 공무원과정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는 해양수산부의 교육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교육실행계획에 교육대상자 선발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교육대상자는 우선,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시·군의 공무원이 일정한 비율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율관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4) 강사육성과정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는 해양수산부의 강사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강사육성과정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그리고 각 교육기관들로부터 교육대상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내용을 폭 넓게 습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교육대상자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도사, 수협 및 수협중앙회의 지도·교육업무담당자 가운데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운데에서 강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한다.

2. 교육행정

가. 교육담당기관

(1) 제1안(행정계통에 의한 방안)

어업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대상자가 7,400여명으로 그 수가 많고, 일정기간 현업을 떠나서 특정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점,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시·도 단위로 자율관리 어업 교육을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전체 어민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목표, 내용 등의 지침을 해양수산부에서 정하여 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하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다음,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주관하되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에 교육을 위탁하고, 연찬과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되 수협중앙회 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하며, 어업인단체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은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제2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수산물 관련 정규 교육기관의 컨소시엄에 대해 어업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며,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이 방안이 갖는 장점으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부관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고, 강사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게 된다는 점, 전국에 산재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참여가 편리하고, 교육을 위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정책적 목표가 다소간 불명확하게 되어 시행과정에 혼란이 우려된

다는 점과 함께, 여타의 관련정책들과 유기적 관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수산해양관련 고등학교와 수산관련 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055-867-0225
완도수산고등학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061-552-2393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032-832-4655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064-782-3178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충남 보령시 신후동	041-931-3471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054-252-0112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2	033-642-7001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033-660-3300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033-250-6114
건국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02-450-3114
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	경남 통영시 인평동 445	055-640-3114
군산대학교	전북 군산시 미룡동	063-469-4113
동우대학교	강원도 속초시 노화동	033-632-6551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죽교동	061-242-5176
부경대학교	부산시 남구 대연동	051-620-6049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2-887-5257
순천향대학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041-560-1114
여수대학교	전남 여수시 둔덕동	061-659-2114
영남대학교	경북 경산시 대동	053-810-2114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064-754-2114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051-410-4114

나. 교육시행 장소 및 시기

(1) 어업인과정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행장소 및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별로 동일한 어업에 있어서도 어업여건이 다르다는

점, 둘째, 현지에서 어업인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지를 떠나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자율관리어업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어업인들에게 동질감·일체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어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넷째,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이동이 불편한 어업인들의 경우, 현지방문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각 지방별로 분산되어 있는 12곳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지방해양수산청에는 PC실,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들 교육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어업인 교육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무부서와 그 관할구역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담당 주무부서	관할구역
인천청	수산관리과	인천, 강화 등
평택청	수산관리과	경기도- 평택, 화성, 오산, 안산 등 충남-당진, 아산 일원
동해청	수산관리과, 속초해양수산사무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포항청	수산관리과, 영덕·울릉해양사무소	경북 일원
대산청	수산관리과, 보령해양수산사무소	보령, 서천, 홍성, 논산 등 충청 일원
군산청	수산관리과, 부안·고창해양수산사무소	전북 일원
목포청	수산관리과, 영광·해남·진도·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영광, 함평, 무안, 신안, 목포, 진 도, 해남, 완도, 강진 등
여수청	수산관리과, 고흥·장흥해양수산사무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 흥, 곡성, 구례 등
울산청	수산관리과	울산광역시 일원
부산청	수산관리과	부산광역시
마산청	수산관리과, 통영·남해·사천· 거제·고성해양수산사무소	경남 일원
제주청	수산관리과, 서귀포해양수산사무소	제주 일원

어업인에 대한 교육시기의 결정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의 어업사정이나 교육행정상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 대강을 자체 실행계획으로 사전에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다소간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서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한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지방문교육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설의 미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교과에 대해서는 여건을 보아 가며 보완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2)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연찬과정

수협중앙회 연수원은 지금까지 수협 직원을 비롯한 각종 어업인단체 구성원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능의 수행을 위해 상당수의 전담직원을 두어 교육행정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나름의 교육기능 수행상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최대 190명을 수용하는 숙식시설과, 강당 및 강의실, PC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이나 연찬과정의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교육 및 부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수	수용인원(명)
교육시설	대강당	1	250
	대강의실	1	150
	중강의실	2	70-80
	소강의실	2	30
	분임토의실	7	16
	세미나실	2	15
	PC교육실	1	60
숙박시설		95(2인1실)	190
체육시설	축구장	1	
	농구장	1	
	배구장	1	
	족구장	1	
	테니스장	1	
	헬스실	1	
식당		1	250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시기 결정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어업인단체의 사정이나 연수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것이지만, 대강의 일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실행계획으로 정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연찬과정은 년초와 년말에 2회 실시하는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정하도록 한다.

(3)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는 수산해양관련 공무원, 어업인단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들의 다년간 축적된 교육경험과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수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 만으로써도 이들 2개 교육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그다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규화된 여타 교육과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설 등의 이용을 중심으로 원활한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의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 의 실				
명 칭	구 분	면 적(m ²)	수용인원	비 고
계			635명	
강의실	1 강의실	301	180	3 층
	2 강의실	172	60	3 층
	3 강의실	112	40	3 층
	원격영상실	99	15	
	강 당	221	106	미래로관 1층
전산실습실	1 전산실습실	73	30	미래로관 1층
	2 전산실습실	165	34	
어학실습실		122	30	미래로관 2층
세미나실		172	40	
분임연구실		27	100(10실)	
생 활 관				
명 칭	구 분	면 적(m ²)	수용인원	비 고
계			162명	
미래로관	침대, 온돌	16실, 9실	32명, 18명	2인1실, 2인1실
세계로관	침대, 온돌	23실, 10실	92명, 20명	4인1실, 2인1실
후 생 시 설				
명 칭	면 적(m ²)	비 고		
식당	501	200명 수용, 민간위탁 운영		
체력단련실 등	207	미래로관 지하1층		

한편, 공무원과정 및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시기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면서,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교육프로그램과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대강의 일정을 실행계획으로 정하고, 다소간 탄력있게 시행하도록 한다.

다. 강사요원 확보방안

자율관리어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강사 확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강사 확보에 있어서는 우선 교육과정별·교과목 종류별로 강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이나 공무원과정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어업인과정의 강사는 강사육성과정을 이수한 강사요원을 해양수산부가 확보하여 강사 Pool시스템을 통해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산소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해양수산부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통해 강사를 확보하고 강사 Pool시스템을 통해 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교육기관이 세부시행계획에서 강사 확보계획을 세워서 조달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한다.

어업인과정의 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어업기술 지도관이나 지도사를 대상으로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을 선행하여 실시한 다음, 이들을 강사로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수산소양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강사별로 전담 교과목을 두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할 목적으로 강사육성과정의 교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키도록 한다.

라. 연차별 교육시행계획

(1) 어업인과정

어업인과정의 교육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구역내 어업인을 교육대상자 전체를 교육하기 위해 운영해야 할 단위교육의 수를 교육과정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방해양수산청	소요 단위교육의 수			
	계	어선어업과정	양식업과정	복합어업과정
인천청	9	3	4	2
평택청	8	0	2	6
동해청	13	10	0	3
포항청	24	18	1	5
대산청	14	3	6	5
군산청	10	6	2	2
목포청	77	8	58	11
여수청	47	5	25	17
울산청	5	3	0	2
부산청	6	3	0	3
마산청	62	28	12	22
제주청	16	2	12	2
계	291	89	122	80

1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행정, 강사 확보 등의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또한 2박3일의 긴박한 교육일정에 비추어 1주에 2개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목포청과 여수청, 마산청의 경우, 교육시행 1차년도내에 요구되는 단위교육을 모두 소화해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교육대상자인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고려할 때, 1년간에 있어서 교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17주)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대로라면, 전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 목포청은 약 4.5년, 마산청은 약 3.6년, 여수청은 약 2.8년, 포항청은 약 1.4년이 소요되는 셈이며, 따라서 2차년도내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목포청과 마산청, 여수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들 지방해양수산청에 있어서는 본청 외의 지역사무소를 통한 교육이나 현장방문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강사육성과정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강사의 육성·확보인데, 어업인과정의 기본교과 및 참여교과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의 수만을 계산하더라도 연 2,037명이 필요하며, 1명의 강사가 교육가능 기간인 17주 내내 교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120명 정도의 강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최소한 150명의 강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25명 단위의 강사육성과정 교육이 6개 이상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연차별 교육시행계획에 있어서도 매년 2개 이상의 강사육성과정 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교과과정

가. 교수학습방법

(1) 교수학습방법의 일반적 유형

(가) 강의법

강의법은 가장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 강사가 교육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교재 이외에 VTR, OHP, 빔프로젝트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강의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언어 위주의 설명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 문답법

강사가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다) 토의법

집단 성원간에 지식이나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일을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법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민주적인 태도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라) 문제해결법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장면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해결법의 주안점은 반성적 사고 능력의 배양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마) 프로젝트학습법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문제해결법의 발전적인 형태이다. 문제해결법은 이론적, 사색적인 문제를 반성적인 사고 활동으로 해결하는 데에 반하여, 프로젝트학습법은 실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재료로 사용하여 실제적인 작업을 통하여 해결해 가는 구성적 활동이다.

(바) 협동학습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모든 학습자가 각기 그 일을 분담하여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사) Buzz 학습

소집단 토의법의 하나로 하나의 주제를 소집단위별로 토의하게 한 다음, 다시 소집단간에 토의하게 하는 학습법으로, 능력이나 지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특히 유효한 것이 된다.

(아) 팀 티칭

다양한 개인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주고 다양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법으로, 2명 이상의 강사들이 팀을 만들어 협동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수업의 형태이다.

(자) 발견학습

결과를 그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잘못된 원인을 발견하여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학습법이다. 이것은 교육대상자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교육받는 내용을 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육대상자들의 능력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차) 모의학습법

역할극 또는 극화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론학습에서 배울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상황을 분석 이해시킴으로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법이다.

(카) 브레인스토밍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멋진 생각을 종이에 적는다든지 말로 표현하게 하고, 다시 이를 정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머리 속에 떠오르면 그 생각을 순서없이 적은 다음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2) 자율관리어업의 교수학습방법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실습위주인 실기교육과 이론위주의 이론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이론교육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인 데에 비해, 실기교육은 특수한 전문분야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수·학습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수산업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실기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구체적 지식이나 인식, 태도 등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별로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교과목 편성상 기본교과와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본교과와 교재를 통해 제시되는 지식은 어떻게 교육대상자들에게 경험(실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과목 편성상의 체험교과를 통해서도 고려되고 있지만, 각각의 교과에 있어서 교육학습방법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재에 제시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자들이 그들 나름의 관련경험을 부단히 회상하여 구체적 지식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확신과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단위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가 동질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의 특성이나 교육목표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어업인 대상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기본교과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강의법이 중심이 되겠지만, 강사는 강의법에 의해 교재상의 내용에 대한 요점만을 시청각 교재 등을 활용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Buzz식의 지정문답법에 의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히 기본교과 가운데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간의 비중을 더욱 크게 한다. 그리고 체험교과 가운데 「시청각교과」의 운영은 시청각시간(25 ~ 30분) 이외의 시간은 Buzz식 토의법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토의 및 발표」는 Buzz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되, 토의 진행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발견학습에 의해 회의진행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시간을 할애한다.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에 있어서도 기본교과의 운영은 역시 강의법이 중

심이 되겠지만, 문제해결법에 의한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며, 체험교과는 문제해결법이나 Buzz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정에 있어서 기본교과는 강의법과 문답법(시간당 10분 정도)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며, 체험교과의 진행은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한다.

연찬과정에 있어서 수산교양과 기본교과는 강의법에 의하도록 하고, 특별강연에 있어서는 10분 정도 질의토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험교과는 Buzz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강사육성과정에 있어서 기본교과는 강의법과 문답법을 대등하게 병용하여 진행하며, 특히 「회의진행방법」 및 「어업인의 인터넷」은 모의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법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체험교과는 프로젝트학습법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의 개요 및 교과목 편성

(1) 어선어업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기본이론 및 효과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의식개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자 육성 및 사명감 고취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및 건전한 어촌사회발전 도모
교육대상	- 어선어업으로 분류된 어촌계의 계장, 간사, 어민후계자, 부녀회장(4명)
교육인원	- 총대상자 : 2,092명 - 기당인원 : 25명
교육기간 및 일정	- 교육일수 : 2박3일(합숙) - 교육일정 :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운영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소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공통교과	어업인의 인터넷	3		3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	2	
		수산물시장 및 유통	2	2	
	전문교과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2	2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2	2	
체험교과	시청각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토의 및 발표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3		3
계			21	12	9

(2) 복합어업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기본이론 및 효과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의식개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자 육성 및 사명감 고취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및 건전한 어촌사회발전 도모
교육대상	- 복합어업으로 분류된 어촌계의 계장, 간사, 어민후계자, 부녀회장(4명)
교육인원	- 총대상자 : 2,036명 - 기당인원 : 25명
교육기간 및 일정	- 교육일수 : 2박3일(합숙) - 교육일정 :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운영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소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공통교과	어업인의 인터넷	3		3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	2	
		수산물시장 및 유통	2	2	
	전문교과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2	2	
		어업관리제도의 이해	2	2	
체험교과	시청각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토의 및 발표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3		3
계			21	12	9

(3) 양식업 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구 분	어업인 교육	과정명	자율관리어업 양식어업 과정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기본이론 및 효과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의식개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자 육성 및 사명감 고취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및 건전한 어촌사회발전 도모 		
교육대상	- 어선어업으로 분류된 어촌계의 계장, 간사, 어민후계자, 부녀회장(4명)		
교육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상자 : 3,292명 - 기당인원 : 25명 		
교육기간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일수 : 2박3일(합숙) - 교육일정 :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운영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소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공통교과	어업인의 인터넷	3		3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	2	
		수산물시장 및 유통	2	2	
	전문교과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2	2	
		어업권제도의 이해	2	2	
체험교과	시청각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토의 및 발표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3		3
계			21	12	9

(4)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식의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강화 - 정부를 대신한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지도 역량 강화 - 지역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대상	- 수협중앙회, 지구별조합 지도직 직원
교육인원	- 총대상자 : 240명 - 기당인원 : 40명
교육기간 및 일정	- 교육일수 : 2박3일(합숙) - 교육일정 : 수협중앙회 연수원 여건에 따라 운영
운영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교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	2	
	수산경제의 특성	3	3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2	1.5	0.5
	어업권제도의 이해	2	1.5	0.5
	수산물시장 및 유통	2	1.5	0.5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	2	1.5	0.5
체험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2		2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2		2
계		21	15	6

(5) 공무원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추진방향의 이해와 정책과제의 이해 - 사업, 조직, 재정 등의 추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 배양 - 일선현장의 지도, 지원의 실무역량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마인드 고취
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 수산과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교육인원	- 기당인원 : 40명
교육기간 및 일정	- 교육일수 : 2박3일(합숙) - 교육일정 :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여건에 따라 운영
운영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교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	2	
	수산경제의 특성	3	3	
	수산물시장 및 유통	2	2	
	어업관리의 목표와 정책수단	2	2	
	어촌 및 어가경영에 대한 이해	2	2	
체험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3		3
계		21	15	6

(6) 연찬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의 공감대 형성 - 자율관리어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세확립 - 사업·조직·재정 등 지역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계기 마련
교육대상	- 해양수산부 4-5급 이상, 시·도 과장급, 지구별수협 조합장 및 지도과장
교육인원	- 100명
교육기간 및 일정	- 1박 2일 - 년 2회
운영	수협중앙회 연수부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교과목 편성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수산교양	선택(I)	2	2	
	선택(II)	2	2	
기본교과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3	3	
특별강연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사례	1		1
체험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3		3
계		14	7	7

(7) 강사육성과정

(가) 교육훈련 개요

교육목표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 배양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교육대상	-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지도직), 수협 지도과 직원
교육인원	- 50명(교육반별 각각 25명)
교육기간 및 일정	- 5박 6일(합숙) - 년 2회
운영	-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에서 주관하며, 수산경제반과 어업제도반으로 구분

(나) 교과목 편성

1) 수산경제반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기본교과	공통교과	실기교육방법	3	3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4	4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4	4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4	4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	3	3	
		회의진행 방법	3	1	2
		어업인의 인터넷	3	1	2
	전문교과	수산경제의 특성	4	4	
		수산물시장 및 유통	4	4	
		어촌 및 어가경영의 이해	4	4	
체험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2		2	
계			41	32	9

2)어업제도반

분 야		과 목	교육방법 및 시수		
			계	강의	체험
기본교과	공통교과	실기교육방법	3	3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4	4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4	4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4	4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	3	3	
		회의진행방법	3	1	2
		어업인의 인터넷	3	1	2
	전문교과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4	4	
		어업권제도의 이해	4	4	
		어업관리의 목표와 정책수단	4	4	
체험교과		어업관리의 사례	3		3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	2		2
계			41	32	9

4. 교육 예산

가. 2004년 하반기 예산

(1) 총 예산

2004년 하반기 예산은 그 기간을 12월까지로 하였고, 여기에는 항목별로는 교재개발비, 각 교육대상자별 운영비를 계상하였다. 단, 시설비는 각 교육기관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총 451,045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생의 숙식비는 광역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계상방식이 다르지만, 어업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므로 숙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광역단위에는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공무원과정, 연찬과정, 강사육성 과정이 있는데, 공무원과정에서는 숙식비를 해당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나머지 교육과정은 모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어업인 교육대상자는 어촌계 단위가 아니고, 우선은 2004년까지 선정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74개를 대상으로 각 공동체별로 4명씩 선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항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LCD TV, 컴퓨터 등	-	기존 시설 활용	
교재개발비	교재집필, VTR 편집 등	235,000		
운영비	어업인	강사료, 교재인쇄, 숙식비 등	174,825	
	어업인단체	"	1,460	
	공무원	"	9,960	교육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연찬회	"	14,300	
	강사육성	"	15,500	
합계		451,045		

(2) 항목별 교육과정별 예산

(가) 시설비 : 기본교육 설비

시설비에는 강의, 시청각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LCD TV(VTR겸용), 빔프로젝트, 컴퓨터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해양수산청(12개소), 수협중앙회 연수원,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연수원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시설	활용내용	단가	비용
LCD TV(VTR겸용) 빔 프로젝트 컴퓨터(모니터 포함) 비품	시청각 교육		기존 시설 활용
	강의 및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책상, 칠판, 마이크 등		

(나) 교재개발비 : 기본교육, 전문교육, 참여교육 및 VTR 교재개발 등

과목구성	과목 및 테입	단가	비용
기본교육 교과목	13과목	1과목당 400만원	13×400만원=5,200만원
전문 교과목	6과목	1과목당 600만원	6×600만원=3,600만원
참여교육 교과목	3과목	1과목당 400만원	3×400만원=1,200만원
일본 사례VTR 더빙	5개	1개당 500만원	5×500만원=2,500만원
국내 교육VTR 제작	3개	1개당 4,000만원	3×4,000만원=12,000만원
합계			23,500만원

일본 사례VTR은 동경수산진흥회에서 제작한 자원관리형어업 홍보VTR을 입수할 예정임.

(다) 운영비 : 강사료, 교육생 숙식비, 교재인쇄비, 홍보비, 유지보수 등

①어업인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40만원	40만원×9과목=36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25명=25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25명=17.5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647.5만원
- 교육대상자	174개 공동체×4명=696명		
- 교육 회수	696명÷25명(1회 교육단위)=27회		
- 운영비 합계	27회×647.5만원=17,482.5만원		

②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40만원	40만원×9과목=36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40명=40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40명=28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808만원
- 교육대상자	200명		
- 교육 회수	200명÷40명(1회 교육단위)=2회		
- 운영비 합계	2회×808만원=1,616만원		

③ 공무원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50만원	50만원×9과목=45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해당 부서에서 지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40명=28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498만원
- 교육대상자	해양수산부 50명, 지방해양수산청 40명, 시군 수산과 50명, 기타 20명, 합계 160명		
- 교육 회수	160명÷40명(1회 교육단위)=2회		
- 운영비 합계	2회×498만원=996만원		

④ 연찬과정(1박 2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50만원	50만원×7과목=35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100명=1,00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5천원	5천원×100명=50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30만원	30만원
합계			1,430만원
- 교육대상자	200명(해양수산부 고위직, 지방해양수산청장, 시군 수산과,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대표, 가타)		
- 교육 회수	200명÷100명(1회 교육단위)=2회		
- 운영비 합계	2회×1,430만원=2,860만원		

⑤강사육성과정(5박 6일)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70만원	70만원×9과목=63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30만원	30만원×25명=75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	1만원	1만원×25명=25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50만원	50만원
합계			775만원
- 연간 교육대상자	50명(지방해양수산청 25명, 관계, 업계, 학계 25명)		
- 연간 교육 회수	50명÷25명(1회 교육단위)=2회		
- 연간 운영비 합계	2회×775만원=1,550만원		

나. 2005년 예산

(1) 총 예산

총 예산은 교재개발비를 제외한 각 교육과정별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육과정별 교육 회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는데, 총 예산은 759,67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과정은 전국 어촌계를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항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LCD TV, 컴퓨터 등	-	기존 시설 활용	
교재개발비	교재집필, VTR 편집 등	-	기 개발	
운영비	어업인	강사료, 교재인쇄, 숙식비 등	647,500	
	어업인단체	"	40,400	
	공무원	"	19,920	교육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연찬회	"	28,600	
	강사육성	"	23,250	
합계		759,670		

(2) 항목별 교육과정별 예산

(가) 시설비 : 2004년과 마찬가지로 기존 교육기관의 시설을 활용한다.

(나) 교재개발비 : 2004년도 하반기에 이미 개발된 것으로 한다.

(다) 운영비 : 강사료, 교육생 숙식비, 교재인쇄비, 홍보비, 유지보수 등

①어업인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40만원	40만원×9과목=36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25명=25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25명=17만5천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647만5천원
- 연간 교육대상자	7,420명÷3년≒2,500명		
- 연간 교육 회수	2,500명÷25명(1회 교육단위)=100회		
- 연간 운영비 합계	100회×647만5천원=64,750만원		

②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40만원	40만원×9과목=36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40명=40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40명=28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808만원
- 연간 교육대상자	200명		
- 연간 교육 회수	200명÷40명(1회 교육단위)=5회		
- 연간 운영비 합계	5회×808만원=4,040만원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③공무원과정(2박 3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50만원	50만원×9과목=45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해당 부서에서 지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7천원	7천원×40명=28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20만원	20만원
합계			498만원
- 연간 교육대상자	해양수산부 50명, 지방해양수산청 40명, 시군 수산과 50명, 기타 20명, 합계 160명		
- 연간 교육 회수	160명÷40명(1회 교육단위)=4회		
- 연간 운영비 합계	4회×498만원=1,992만원		

④연찬과정(1박 2일 기준)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50만원	50만원×7과목=35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10만원	10만원×100명=1,00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100페이지)	5천원	5천원×100명=50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30만원	30만원
합계			1,430만원
- 연간 교육대상자	200명(해양수산부 고위직, 지방해양수산청장, 시군 수산과,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대표, 가타)		
- 연간 교육 회수	200명÷100명(1회 교육단위)=2회		
- 연간 운영비 합계	2회×1,430만원=2,860만원		

⑤강사육성과과정(5박 6일)

항목	내용	단가	금액
강사료	여비, 숙박비, 여비 등	1인당 70만원	70만원×9과목=630만원
교육생 숙식비	숙박 및 식대 등	1인당 30만원	30만원×25명=750만원
교재인쇄비	교재인쇄비	1만원	1만원×25명=25만원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50만원	50만원
합계			775만원
- 연간 교육대상자	50명		
- 연간 교육 회수	50명÷25명(1회 교육단위)=3회		
- 연간 운영비 합계	3회×775만원=2,325만원		

제5장 교재개발

1. 교재개발상의 기본방침

가. 수산소양 교과목 교재

- 어업과 관련하여 시사성이 큰 사실의 내용 설명을 중심으로 함
- 교육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의 서술
- 내용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에 비중을 둠
- 1시간당 교재내용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6페이지 정도
- 내용 가운데 그림이 30% 정도가 되도록 분량을 구성

나. 기본 교과목 교재

- 교재내용의 수준은 고등학교 저학년
-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원리나 인과관계의 설명에 중점을 둠
- 가능한 한 실제적인 자료나 사실을 예시하여 현실감있게 설명하도록 함
- 1시간당 교재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8페이지 정도
- 내용 가운데 표나 그림이 20% 정도가 되도록 분량을 구성
- 단원마다 마지막 부분에 10분 정도 토의할 내용을 2 - 3개 제시
- 활자체 크기는 15포인트 정도로 하고, 줄간격은 180% 이상으로 함

다. 토의식 교과목의 교재

- 특정 이슈에 관해 교육대상자 스스로 토의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
- 여러 형태의 회의방식에 대한 설명과 각각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
- 교육대상자가 이를 통해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구체화될 것

라. 시청각 교재

- 현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도록 할 것
- 단위 내용은 25분 -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

- 가능한 한 어업관리 여부에 따른 상반된 결과의 자료를 대비하여 수록함
- 비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담고 있도록 할 것
- 외국의 시청각 교재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함

2. 교과목의 종류

가. 수산소양 교과목

- WTO체제와 우리 어업
- UN해양법체제가 우리 어업에 미친 영향
-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주장
- 포경어업은 재개될 것인가
- TAC에 의한 어업관리란
- 북한의 수산업 실태
-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실태
- 해양레저활동과 어업
- 수산행정의 이해
- 수협계통조직의 이해
- 불법어업의 유형과 그 폐단

나. 기본교과 교과목

과목명	교육과정				
	어업인	어업인단체	공무원	강사육성	연찬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	○	○	○	○
수산경제의 특성		○	○	○	
어촌 및 어가경영의 이해			○	○	
수산물시장 및 유통	○	○	○	○	
어업관리의 목표와 정책수단			○	○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	○		○	
어업권제도의 이해	○	○		○	
어업관리제도의 이해	○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		○		○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			○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			○	
어업인의 인터넷	○			○	
실기교육방법				○	
회의진행방법				○	

다. 체험교육 교과목

- 어업관리상의 애로와 해결방안(발표 및 토의)
- 어업관리의 사례(시청각교육)

3. 교과목별 교재의 주요내용

가. 수산소양 교과목

(1) WTO체제와 우리 어업

- WTO에 관한 설명 (3페이지)
- WTO협상내용 가운데 수산업과 관련된 것의 소개 및 설명 (3페이지)
- 上記의 것과 관련된 현행 수산정책 설명 (2페이지)
- WTO규정이 실제로 우리 어업에 적용될 때의 영향 (2페이지)
- 일반국민들의 여론과 우리 어업의 대응방안 (2페이지)

(2) UN해양법체제가 우리 어업에 미친 영향

-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의 역사적 과정 (3페이지)
- UN해양법회의의 진행과정 (2페이지)
- 동북아지역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 (2페이지)
- 한·중·일간 협정의 성격과 내용 (2페이지)
-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이 우리 어업에 미친 영향 (3페이지)

(3)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주장

- 국익,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 독도가 갖는 의미 (2페이지)
- 「독도 문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여타의 국제적 분쟁사례 소개 (2페이지)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측의 주장 (3페이지)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 (3페이지)
-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위 (2페이지)

(4) 포경어업은 재개될 것인가

- 포경어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2페이지)
- 우리나라 근해수역에서의 포경어업 역사 (2페이지)
- 고래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간의 인식 및 관리기준의 차이 (2페이지)
- IWC의 주요규정 및 최근의 동향 (2페이지)

- 우리나라 근해수역에서의 고래자원 변동과 그 영향 (2페이지)
- 우리나라 경육의 실제적인 수급동향 (2페이지)

(5) TAC에 의한 어업관리

- 어업관리방식의 유형과 내용 (3페이지)
- UN해양법(배타적경제수역)과 TAC (2페이지)
- TAC에 의한 관리방식의 구체적 형태 (3페이지)
 - 올림픽방식, IQ방식, ITQ방식
- 우리나라에 있어서 TAC에 의한 어업관리방식 적용의 문제점 (3페이지)
-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 향방 (1페이지)

(6) 북한 수산업의 실태

- 북한 수산업 생산량의 추이 및 그 구성 (2페이지)
- 동·서 해역별 주요어업과 주요어획물 (2페이지)
- 생산주체 및 생산조직으로서의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2페이지)
- 수산물 수급과 가공 및 유통의 실태 (2페이지)
- 수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 물적생산수단의 부족 (2페이지)
- 남북한 수산협력의 향방 (2페이지)

(7)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급실태

- 수산물 생산량 및 가격의 추이 (2페이지)
- 식품부류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단백질 공급량의 추이 (2페이지)
- 최근 수산물 소비에서의 변화 (3페이지)
- 말단유통의 변화와 그것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2페이지)
- 수산물 수급 및 이용상의 추이 (2페이지)
- 향후 변화에 대한 전망 (1페이지)

(8) 해양레저활동과 어업

- 해양 및 수산자원의 전통적 이용자로서의 어업인 (1페이지)
- 해양레저활동의 유형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증대 (3페이지)
- 해양 및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과 해양레저의 경쟁적 관계 (2페이지)

- 해양 및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과 해양레저의 상호보완적 관계 (2페이지)
- 해양 및 수산자원의 유지·보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2페이지)
- 어업과 해양레저활동의 조화로운 질서확립 방안 (2페이지)
 - 해양레저활동의 제도화 등

(9) 수산행정의 이해

- 수산정책의 체계 (2페이지)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의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3페이지)
- 시·도 수산행정의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1페이지)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간 수산행정 관련체계 (2페이지)
- 어업인단체(수협)에 대한 수산행정의 지도·감독업무 (1페이지)
- 현행의 각종 수산정책에 대한 소개 (2페이지)
- 향후 수산행정의 변모 (1페이지)

(10) 수협계통조직의 이해

-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협동조합의 본질 (3페이지)
- 수협계통조직의 발전과정 (2페이지)
- 수협계통조직의 실태 (2페이지)
 - 조직체계, 종류, 조합원수, 어촌계
- 수협법상의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 및 설명 (2페이지)
- 수협의 각종 사업과 사업간 관련성에 대한 설명 (2페이지)
- 향후 수협계통조직의 변화 방향 (1페이지)

(11) 불법어업의 유형과 폐단

- 불법어업의 유형 및 성격 (3페이지)
- 불법어업자의 경영적 특성 (2페이지)
- 불법어업의 폐단 (3페이지)
 -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불법어업의 지도·감독기관 (2페이지)
- 불법어업의 근절이 어려운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 (2페이지)

나. 기본교과목

(1)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2시간 교육용)

제1장 자율관리어업의 등장 배경 (4페이지)

1. 어업여건의 변화 (1.5페이지)

- 어장 및 자원의 감소, 어획물 가격의 정체, 어업비용 상승, 노동의 양적·질적 저하 등에 대해 기술함

2. 어업질서의 해이 (1페이지)

-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이후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불신감 팽배, 행정에 의한 어업관리의 비용증대와 규제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기술하고, 불법어업의 사례를 유형별로 예시함

3. 어업경영 악화 (1.5페이지)

- 과당어획경쟁에 따른 어업의 고비용 구조, 어장축소 및 자원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자원조성의 열악화에 따른 어획고 감소 등에 대해 기술하고, 최근 어업경영의 수익성에 관한 지표를 제시함

제2장 자율관리어업의 어업관리 (6페이지)

1. 자율관리어업의 목표 (2페이지)

-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수산자원의 유지·증대를 통한 생산의 효율화보다는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대에 중점을 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의 유지·증대를 기하는 데에 노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2. 어업관리방식 (2페이지)

-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대를 과당어획경쟁의 배제와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협동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이며, 어업인 스스로 관리의 내용이나 규칙을 정하고 또한 지도·단속한다는 의미의 자율관리란 어업인간의 어획경쟁 배제와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기술함

3. 자율관리어업의 성립조건 (2페이지)

-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협동적 노력에 따른 효과를 실감하는 일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관해 기술함. 그리고 협동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련어업인의 일치단결과 상당기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므로, 시작단계에서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여 기술함

제3장 자율관리어업의 기대효과

1. 자원의 유지·증대 (1페이지)

- 자원의 유지·증대는 이들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협동적 노력이 아니고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함

2. 어업비용의 절감 (2페이지)

- 어선 등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도한 어구사용, 어선 및 어구의 보수·정비 불철저, 연료의 과다소비 등의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은 과당어획경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해소·완화하는 데에 있어서 자율관리어업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술함

3. 어업노동의 현대화 (1.5페이지)

- 어업노동은 소위 「3D」 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업인들의 삶 자체를 고달픈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노동의 전근대성은 많은 부분이 어획경쟁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자율관리어업을 실현함으로써 어업노동을 편안하고 쾌적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젊은 어업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함

4. 생산력의 증대 (1.5페이지)

- 협동에 의해 종래 개별어업인이 담당하고 있던 어군탐색, 어획, 운반, 가공 등의 기능을 각각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어업인 전체로 볼 때,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 관해서 기술함

5. 어획물 가격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 (2페이지)

- 개별적인 경쟁조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동향을 감안한 어획량 조절이 불가능하며, 어획과정이나 어획 이후의 세심한 품질관리가 어려우므로 높은 가격의 실현이 어려웠지만,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므로 수익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술함

(2) 수산경제의 특성 (3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 단체의 직원 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교육용 교과목인데, 자율관리어업이 현실의 우리나라 수산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를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의 기반을 형성시키는 데에 목표를 둬.

제1장 국민경제에 있어서 수산업의 역할 (8페이지)

1. 단백질의 공급원 (2.5페이지)

식생활에 있어서 단백질은 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축산물은 수입물이나 수입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어서, 식량의 자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함

2. 외화 획득원 (1페이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 수입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일정액의 수출을 통해 실제로 획득하는 외화는 상대적으로 적음에 비해, 수산물은 외화획득율이 높으므로 외화획득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함

3.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문화의 계승·보존 (1페이지)

전국 연안에는 수산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중소도시나 어촌이 많이 산재해 있으면서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의 유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수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함

4. 취업기회의 제공 (1.5페이지)

현재 수산업에 직접 취업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를 추산하여 나타내고, 또한 여타산업에서는 취업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수산업은 그들에게 노동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기술함

5. 해양환경의 보전에 기여 (2페이지)

육상에서의 인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이 최종적으로 집적되는 곳이 해양이며, 따라서 해양환경은 곧 지구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양환경의 보전에 있어서 해양을 생계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들은 무상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함. 관련하여 씨프린스호에 의

한 유류 해상유출사고나 시화호의 오수방출사고시에 있어서 어업인들의 활약 등을 예시함

제2장 수산업의 특수성

1. 생산의 불확실성 (1.4페이지)

수산업 생산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업인의 의지나 노력이 생산의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 자체를 등한히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수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어업인간의 협동이 유력한 방안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함. 그리고 생산의 불확실성이 수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함

2. 생산물의 강한 부패성 (4페이지)

일단 어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획물이 갖는 강한 부패성으로 인해 어업인은 판매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시장가격에 대응한 출하조절이 어렵게 됨으로써 높은 가격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어획단계에서부터 출하조절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어업인들에 의한 경쟁적 어획이 아니라 어획과정에서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함. 그리고 생산물의 부패성과 관련지워서 수산물유통에 대해서도 설명함

3. 어장 및 수산자원의 공유재산적 성격 (3페이지)

어업생산의 기초가 되는 어장이나 수산자원은 사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어장 및 수산자원의 성격에 기인하여 개별어업인간의 어획경쟁과 그에 따른 폐해, 그리고 관리 부실이 초래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다음, 이를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간의 협동에 의해서만이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함

4. 어업노동 및 어업자원의 비유동성(3페이지)

일단 어업에 투입된 자본이나 노동은 어업의 사정이 악화되더라도 다른 산업 등으로의 전환이 매우 제약된다는 점과, 따라서 이러한 어업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적 논리로써만 대처할 수 없으며 사회적측면에서의 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함. 그리고 현재로서 어업인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어업 자체의 내발력을 일깨우는 자율관리어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 뿐 아니라 어업인단체나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3) 어촌 및 어가경영의 이해 (3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안어업의 주체인 어가경영과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어촌에 대해 이해시킴으로써 경제활동으로서의 어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즉 수산정책이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와, 수산행정이 지도행정·서비스행정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둠.

제1장 어촌 및 어촌계 (12페이지)

1. 어촌의 정의 (2페이지)

지리적 특징이나 어업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 어가의 구성비 등에 의한 어촌의 정의를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어촌으로서의 특징은 어업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규율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축이 된다는 점에 있음을 설명함. 개개 어업인의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어업생산활동을 구성원 전체 내지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통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어촌의 특징으로 기술함

2. 어업과 어촌 (3페이지)

어업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어업인들의 거주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어촌은 어업인이 어장에 접근하는 통로이고, 어획물의 처리·판매, 생산수단의 정비·보수 등 생산활동의 근거지이면서, 동시에 어업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곳임을 기술함. 그리고 어촌지역사회는 지역어업 및 지역어업인 전체의 유지·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술함

3. 어업에 있어서 어촌의 기능 (3페이지)

어업의 기반이 되는 어항 및 부대시설 등은 어업인 등이 정주하고 있는 어촌이 있음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으며, 어획물의 처리·판매나 각종 선수품의 보급, 어업노동력의 조달·확보 등 어업에 필수적인 제반 기능 역시 어촌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함.

4. 어촌계의 의의 및 운영실태 (4페이지)

어촌사회내에서 어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어업인 만으로 별도의 어촌계를 조직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1970년대 중반이후 공동어업권 등을 어촌계에 부여하게 된 정책의 배경과 현실에 있어서의 어촌계의 기능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함

제2장 어가경영 (12페이지)

1. 어가경영의 특성 (4페이지)

하나의 경영조직형태로서의 어가경영이 기업경영이나 조합경영에 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함. 구체적으로는 투자의 목적이나 노동력의 구성, 가계와의 관련성, 어업비용 및 이윤에 대한 인식 내지 개념, 경영규모, 자본조달 능력,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어가경영이 갖는 특성을 설명함. 또한 겸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함.

2. 어가경영과 수협 및 어촌계 (4페이지)

어가경영은 어촌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경영규모의 영세성이나 겸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시장정보의 부족 등에 기인하여 독자적으로 어획물 판매활동이나 어업용 자재의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영세한 어가경영이 협동을 통해 시장대응력을 강화시키고자 조직한 것이 수협이며, 수협은 각종의 경제사업을 통해 그러한 어가경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함. 또한 경제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협의 규모 및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활동이나 어장관리에 있어서의 협동이 소홀히 됨으로써, 수협을 대신하여 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된 것이 어촌계임을 설명함

3. 어가경영과 지역영어계획 (2페이지)

어가경영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활동이 일정한 어장범위내에 머물러 있는 한, 경영의 발전은 어장이나 수산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을 설명함.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인 경영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내 어가경영 집합체의 차원에서 경영의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이 지역영어계획이라는 것과 지역영어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술함

4. 어가경영이 당면한 문제와 대책 (2페이지)

오늘날 어가경영이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어가경영이 기반을 두고 있는 어촌사회의 활력 상실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기술함. 그리고 이러한 어촌사회의 변화는 젊고 의욕있는 어업인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과, 어업인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기술함.

(4) 수산물 시장 및 유통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 어업인단체의 직원 및 지도자,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시장대응적 생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수산물시장 및 유통의 특성과 실태를 명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해서는, 어획단계에서부터 시장가격을 감안한 어획량 조절의 중요성과 어업인들이 생산지단계에서의 가공이나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가격상승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또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측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데에 교과목의 목표를 둬.

제1장 수산물시장 및 유통의 특성 (9페이지)

1. 수산물시장 및 유통의 개념 (1.5페이지)

수산물시장이라 할 때의 ‘시장’은 개념적인 시장으로, 소매상이 집결해 있는 구체적 시장이나,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등과 같은 유통기능을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판매의 가능성을 내포한 유효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설명함. 그리고 유통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체의 경제활동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유통경로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2. 수산물시장의 여건 (3페이지)

수산물시장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소득이나 인구, 수산물의 소득탄력성, 수산물에 대한 기호, 물적 유통시설 및 수단, 수요의 공간적 밀집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시장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와 그것이 수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기술함

3. 수산물유통의 특성 (4.5페이지)

다단계과정과 과당유통경비로 특정지워지는 수산물유통의 주된 유통경로를 제시하고, 그러한 유통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함과 함께, 중심적인 유통기구로서 생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필요성 내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함. 또한 주요어종에 대해 최근의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을 표로써 나타내어 비교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유통비용과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물유통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함. 그리고 생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운영체제나 거래방법에 대해서도 농안법 등의 제도를 참고하면서 설명함.

제2장 향후 수산물시장 및 유통의 변화 (7페이지)

1. 수산물시장의 여건 변화 (3페이지)

수산물시장을 규정하는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전망한 다음, 수산물 수입의 동향과 수산물에 대한 기호나 소비층의 요구 변화를 생활양식이나 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지워서 검토해 봄으로써, 수산물시장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는 내용을 기술함

2. 수산물유통의 변화 (4페이지)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이나, 시장정보의 확보를 통한 어업인들의 시장대응력 강화라든지 생산지단계에서부터 가공수산물의 비율이 증대되는 등의 생산층의 변화가 생산지도매시장의 기능 변화를 비롯하여 수산물유통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기술함. 그리고 소비자층의 수산물 구매패턴이나 기호의 변화와 대형양판점 주도의 소매형태 변화가 소비지도매시장의 기능 변화를 비롯하여 수산물유통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기술함

(5) 어업관리의 목표와 정책수단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업관리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되는 정책수단의 종류 및 체계에 관해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과 현행 어업관리정책 및 각자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표를 둠

제1장 어업관리의 목표 및 관리기준 (8페이지)

1. 어업관리의 개념 (3페이지)

어업관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적관리와 사적관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관리목표 등을 대비하면서 설명함. 어업관리는 수산자원관리, 어장관리, 경영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각각에 대해서 관리대상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공적관리를 중심으로 설명함

2. 어업관리의 목표 (3페이지)

수산정책이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의 효율화, 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에 비해, 수산정책의 일환으로서 어업관리정책은 수산자원, 어장, 어업경영 등의 대상분야에 대해 각각 어떠한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하위의 목표들을 조화시켜 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를 국민경제적 요구의 다양성과 관련지워서 설명함

3. 어업관리의 관리기준 (2페이지)

어업관리정책이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 및 정책용구를 채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함

제2장 어업관리의 정책수단 (8페이지)

1. 정책수단의 체계 및 종류 (5페이지)

정책수단의 체계는 각각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다시 정책수단을 실시하는 도구로서의 정책용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 현행 어업관리정책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의 체계를 나타내어 설명하고, 세부 정책목표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설명함

2.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정책수단 (3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현행의 각종 제도나 정책들을 일괄하여 나타내고, 이들 제도나 정책이 자율관리어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자율관리어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정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함

(6) 어업허가제도의 이해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현행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를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제도나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해소시키고,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둠

제1장 허가어업의 제도적 구분 (3.5페이지)

1. 허가주체에 의한 제도적 구분의 의의 및 문제점 (1.5페이지)

허가주체에 따라 어업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한 것은 그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각 어업은 그 허가주체가 관할하는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조업구역이 연안의 특정수역에 한정되는 것이 근해어업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혹은 하위법령에 의해 조업구역이 일부의 수역

에 제한되는 어업들을 예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경영적인 관점과 관리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함

2. 어법 및 조업구역에 따른 업종 구분의 의의 및 문제점 (2페이지)

시행령에서 어업의 종류를 어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내용을 예시하고, 그러한 구분을 하게 된 의의를 설명함과 함께, 어법에 대한 설명의 불명확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함.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를 허가규칙을 통해 다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어업의 명칭을 부여하고, 어선의 규모나 기관마력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한 구분의 의의를 설명함과 함께, 구분의 기준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명확성 및 다양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함

제2장 어획노력에 대한 제한(7페이지)

1. 허가의 방법(2페이지)

허가제도란 허가건수에 의해 어선의 척수 등 어획노력량을 조절함으로써 자원의 관리와 어업경영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업관리방식이라는 점을 어획량관리나 질적관리와 비교하여 설명함. 우리나라의 어업허가방식은 정치성구획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어획노력의 관리단위는 어선척수이지만, 1척에 대해 3 이하의 복수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된 척수 만으로 어획노력량을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함. 그리고 허가건수의 조절에 있어서는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적정 어획노력량이라는 측면보다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적정 경영체수 또는 어선척수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함

2. 허가정한수 (2.5페이지)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허가정한수와 허가규칙상의 연안어업 허가정한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한 허가정한수를 정하고 있는 의의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함. 또한 자원관리나 경영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적정 어획노력량 내지 허가건수로의 조절은 원래 허가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령을 통해 정해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연유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함. 그리고 허가규칙에 따른 어업의 구분과 이들 허가정한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업구역별 내지 지역별 허가정한수 설정을 통해 업종을 세분화하는

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관리기술적 관점에서 기술함

3. 어선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2.5페이지)

허가제도는 허가건수 내지 어선척수를 조절함으로써 어획노력이나 경영체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허가건수나 어선척수 만으로서는 질적변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규칙을 통하여 업종별로 어선의 규모나 기관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선복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 설명함. 그리고 이러한 어선 등에 대한 규제는 어획노력량의 실질적인 증대와 어획경쟁에 따른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어업경영으로 하여금 경영적 대응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술함

제3장 질적규제 및 어획량 제한 (5.5페이지)

1. 질적규제 (2페이지)

자원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어획노력이나 어획량에 대한 양적규제와 대비하여 질적규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수산자원보호령 및 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업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이를 크게 구분하여 소개함. 그리고 이들 가운데 조업금지구역의 설정이나 조업구역의 제한 등과 같이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의나 목적에 대해 검토하여 언급함

2. 어획량 제한 (3.5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방식에 대해 이를 채택하게 된 배경과 그 의의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적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및 실적에 대해서 소개함. 그리고 TAC관리방식의 구체적 형태로서 개별할당제(IQ제) 및 양도가능할당제(ITQ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함

(7) 어업권제도의 이해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권제도를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제도나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해소시키고,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1장 어업권어업의 면허 (5.5페이지)

1. 어업권어업에 대한 제도적 구분의 의의 및 문제점 (3페이지)

어업권어업의 어장이용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는 수산업법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 다음, 양식어업에 속하는 것들이 5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함. 한편, 그러한 양식어업에 대해 수산업법시행령에서 양식방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한 그러한 재구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함. 그리고 복합적인 목적이나 기준에 의해 어업권어업, 특히 양식어업을 지나치게 세분한 일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점에 관해서도 기술함

2. 어장이용개발계획과 어업권자의 선정 (2.5페이지)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장에 대해 새로이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제도화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함. 그리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업인들로부터 면허신청을 받아서 이들 가운데에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우선순위」 규정에 의해 어업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함

제2장 어업권제도의 운용 (6.5페이지)

1.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2페이지)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어업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효기간을 두게 된 제도적 취지와 어업종류 마다의 경제적 성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효기간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함.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바, 그러한 일의 의의를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지워서 설명함

2. 어업권의 권리적 성격 (2페이지)

어업권의 실질적 유효기간은 20년인 셈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어장이용개발계획상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현행의 면허우선순위에 의한다면 기어업권자가 다시 면허받게 되어 있으므로, 어업권은 사실상 시한이 없는 영대재산권이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어장이용상의 문제를 설명함

3. 어업권어업의 제한 (2.5페이지)

어업권은 어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어업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한 어업인의 선정방법이 면허우선순위 규정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취득후 이를 자의적으로 임대·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당해어업 경영에 대한 타인의 지배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할·변경이 제한되는 것도 당연한 일임을 설명함

제3장 어업관리 (4페이지)

1. 마을어업 (2페이지)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수협 등 어업인단체에 대해서만 어업권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적 취지를 어장 및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어촌계·수협·영어조합법인에 한해서 면허하는 여타의 어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설명함. 한편, 어업권자에 대해 수산종묘 살포를 의무화하고, 수산자원의 채포방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도수간권취 등 비능률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장관리규약이나 어업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지워 언급함

2. 양식어업 (2페이지)

양식어업에 있어서 어장이용은 면허시에 정해진 품종 및 양식방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어업권자가 자의적으로 품종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어촌계 등의 어업인단체에만 한정할 일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함. 그리고 어장관리를 위해서 어업권자에 대해 어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어장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고 있으며, 어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정하여 어장이용방법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함과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함

(8) 어업관리제도의 이해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현행 우리나라 어업허가 및 면허제도를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제도나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해소시키고,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둬

이 교과목의 교재는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어업허가제도의 이해」와 「어업권제도의 이해」의 교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9) 어업인단체와 어업관리(3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단체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업관리에 있어서 어업인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와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이해시킴으로써 각자의 담당업무를 어업관리와 관련지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둬. 특히 자율관리어업의 실현을 위해 어업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업인단체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어업관리에 대한 어업인단체 직원의 관심과 이해는 절실하게 요구됨

제1장 어업관리의 주체로서의 어업인단체 (9페이지)

1. 어업관리주체로서 기대되는 이유 (3페이지)

수산자원의 공유재산적 성격 및 어장의 상호관련성에 기인하여 자원 및 어장에 대한 관리는 개별경영의 대응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정부 외에 관리주체로서 상정되는 것으로서는 자원 및 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진 어업인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 밖에 없음을 설명함. 구체적으로 어업인단체로서는 수협계통조직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수협조직 만이 지도 및 경제사업을 통해 개별경영들의 생산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어업관리주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을 기술함

2. 제도적으로 위임받은 관리권한 (1.5페이지)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어장이 특정수역내에 있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다를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 등 양식어업, 그리고 대단위개발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 등에 대해서 어업권자를 어업인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제도적 의의를 관리권한의 위임과 관련시켜 설명함. 그리고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보유하

는 어업권에 대해서 행사자 및 입어자의 자격, 입어 및 행사 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등의 관리내용을 어장관리규약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한 일의 의의에 관해서도 설명함

3. 어업관리에 대한 어업인단체의 대응 (2페이지)

어업관리에 대한 책임과 결합되어 이용의 권리가 부여된 어촌계 등의 보유 어업권에 대해 권리의 측면 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어업인들은 이를 공동의 재산이라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어업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용의 권리가 모든 구성원에 평등하게 배분되어 버림으로써 어업관리에 있어서 어촌계 등의 지도·통제의 여지가 상실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촌경제에 있어서 어촌계 등의 보유 어업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과 구성원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함

4. 어업관리주체로서 조직체계상의 한계 (2.5페이지)

어업인단체에 의한 어업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업관리기능이 각종 경제사업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어업관리는 어촌계가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사업은 지구별수협이 담당함으로써, 어촌계로서는 구성원들의 생산활동을 파악·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함. 그리고 실제적 어업관리주체인 어촌계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독자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으며, 또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성원간의 이질성이 크게 된다는 점도 어업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함

제2장 자율관리어업과 어업인단체 (7페이지)

1.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어업인단체의 역할 (2.5페이지)

자율관리어업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단체는 어업인에 대한 리더쉽을 가지고 관련 어업인들을 자율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계몽하여야 함을 강조함. 그리고 자율관리가 구성원의 어업경영에 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의 내용이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통제하는 등의 일을 중심으로 어업인단체의 역할을 기술함. 아울러 구성원간에 생산규모나 소득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어업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갖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 관해서 기술함.

2. 어업인단체 기능조직 재편의 필요성 (2.5페이지)

자율관리어업을 주도할 어업인단체에 있어서 지역의 어업 사정이나 구성원들의 어업경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합한 관리규정이나 관리방법의 모색이나 효과적인 지도·통제를 위해서, 또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설명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단체가 구성원들에 대해 판매·구매·신용사업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사업기능을 각각의 관리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업인단체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함

3. 어업인단체 직원의 의식전환 (2페이지)

어업인단체는 구성원의 어업생산활동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위한 기능 수행에만 그치지 말고, 그들의 어업생산활동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설명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업인단체 직원은 행정이나 어업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행정이나 어업인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함

(10) 수산자원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과잉어획이나 무절제한 방식에 의한 어획이 수산자원의 양적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해시킴으로써 스스로 어획을 자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동료 어업인들과도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서로 의논하고 협동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포함한 어업관리제도나 정책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둬

제1장 수산자원 변동의 구조 (4페이지)

1. 수산자원의 특성 (1페이지)

천연자원을 자원적 특성인 갱신적 성격의 유무와 갱신에 있어서의 자율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 이용 및 관리상의 특징을 설명함. 특히 자율적 갱신 자원인 수산자원에 있어서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하여 설명함

2. 자연상태하의 수산자원 변동구조 (1.5페이지)

릿셀의 제1 방정식 $P_{t+1} = P_t + A + G - D$ 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연증가량 ($A + G - D$)의 각각의 요소에 관해서 설명함

3. 어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산자원 변동구조 (1.5페이지)

릿셀의 제2 방정식 $P_{t+1} = P_t + A + G - D - Y$ 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연증가량 만큼 만 어획한다면, 자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일정량을 영구히 어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함. 그리고 수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인간의 관심은 $A + G - D = Y$ 를 최대로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함

제2장 자연증가량을 결정하는 요소 (6페이지)

1. 자원량 수준 (1.5페이지)

수산자원의 자연증가량은 밀도의존적이므로 그때의 자원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원량수준과 일정기간의 자연증가량간의 관계를 Schaefer모델을 통해서 설명함

2. 어장환경 (1.5페이지)

동일한 자원량 수준에서도 어장환경에 따라 자연증가량은 변동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원 및 자연증가량의 변동을 Schaefer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장개량조성이나 어장청소, 인공어초 설치 등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함

3. 인공종묘 방류의 자원관리적 의의 (3페이지)

자연상태하에서 수산자원의 초기감모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란 방류에서부터 중간육성후 방류에 이르기까지 방류종묘의 성장단계별 방류가 가지는 자원적·경제적 의의에 대해 자원의 성장단계별 생존량에 관한 그림을 통해 설명함

제3장 지속적어획량 (6페이지)

1. 지속적어획량과 최대지속적어획량 (4페이지)

각각의 자원량 수준에서의 자연증가량 만큼 만을 어획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일정량의 어획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획량을 당해 자원량 수준과 결부시켜서 지속적어획량이라 함을 표 및 그림을 통해서 설명

함.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목표가 되어 왔던 최대지속적어획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외의 관리목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함

2. 남획 (2페이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남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폐단을 경제적측면에서 생산요소의 낭비로써 설명함

(11)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2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주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밀식 등의 무절제한 어장이용이나 어장내 양식 부산물 또는 어구 등의 침전·퇴적이 장기적으로 어장환경과 생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킴으로써, 어장이용에 있어서 스스로 절제된 행동을 하게 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하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양식업과 관련된 각종의 규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둬.

제1장 어장환경의 특성과 요소 (5페이지)

1. 어장환경의 특성 (1페이지)

수산생물에 있어서 해수는 육상생물에 있어서의 대기와 달리 그 생명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생물의 활동은 그러한 해수를 매개로 하여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어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따라서 특정 수산물에 관한 어장환경도 그것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뿐 아니라, 그 수산생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환경요인 일체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함

2. 연안의 지형 (1.5페이지)

연안의 지형을 해안선의 형태와 성상에 따라 구분하고, 그 각각의 어장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함.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서는 리아스식과 비리아스식, 내만, 다도해, 외해성 해안 등이 있으며, 기질에 따라서는 간석지, 사빈지, 암초지대 등이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특수한 해저지형(예를 들면, 어초지역이나 汝, 왕돌암 및 소코트라해역 등)을 가진 해역의 어장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함

3. 수질 및 프랑크톤 (1.5페이지)

수온, 염분농도, 용존산소의 량, 수소이온 농도, 영양염류, 프랑크톤 등 어장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각각의 요소들이 서식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어장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함

4. 해수의 운동 (1페이지)

조류, 해류, 파도(연안류) 등 해수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들에 의한 해수의 교체나 부유성 난 및 치자어를 포함한 각종 물질의 이동·확산에 따른 어장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함

제2장 어장환경 훼손의 요인과 영향 (6페이지)

1. 수질오염 (3페이지)

어장환경 훼손의 요인으로서의 수질오염과 그것이 수산생물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수질오염의 형태를 유기물오염, 기름오염, 중금속 및 농약오염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오염원이 어업 피해로 이어지는 형태를 폐수의 분산, 부유물의 분산과 침강, 저질의 오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그리고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의 피해에 대해서 수산생물의 대량폐사, 어장가치의 저하, 어획물 조성의 변화, 어획물 상품가치의 저하, 어구훼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함

2. 매립 및 준설 (2페이지)

수산생물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아스식 해안의 간석지 등이 매립의 주요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매립 등에 의한 어장환경의 변화를 지형 변화에 수반된 직접적인 것과 매립지의 이용에 수반된 간접적인 것, 공사중의 준설토사에 의한 수질오탁에 수반된 것으로 구분하여 그 피해를 설명함

3. 기타 (1페이지)

연안지역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의 실태와 그것이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유어를 비롯한 해양레저활동이나 어업인의 자가오염 등이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함

제3장 어장의 개량·조성 (5페이지)

1. 어장환경의 개선 (3페이지)

어장환경의 개선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개하고, 그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

- 水理환경의 개선 : 만구개량, 수로확장, 도류제(導流堤) 조성, 물고랑 조성, 와동초(渦動礁) 조성, 파동도수(波動導水) 시설

- 저질의 개선 : 객토, 경운, 준설, 인공간석지 조성 등
- 소파시설 : 방파제, 잠제(潛堤), 장벽제, 부류식 소파제
- 기타 : 시비(施肥), 이료해조의 증식, 해적생물의 구제, 어부림 조성 등

2. 인공어장의 조성 (2페이지)

인공어장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공어장 조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 인공어초 : 인공어초의 종류와 소재가 갖추어야 할 성질(기능성, 안정성, 내구성, 경제성),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공어초의 형태
- 축기(築磯) : 투석, 암면조성

(12) 어업인의 인터넷 (3시간 실습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늘날 정보교환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수산관련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수산관련사이트의 종류와 정보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컴퓨터에 대해 친숙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용이하게 입수한 각종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1장 E-메일 (5페이지)

1. E-메일 보내기 (3페이지)

- (1) 첨부파일 보내기
- (2) 주소록을 이용한 E-메일 보내기
- (3) 문단 및 글자 모양 바꾸기

2. E-메일 받기 (2페이지)

- (1) 첨부파일 확인하기
- (2) 메일 저장하기

제2장 정보검색 (10페이지)

1. 정보검색이란 (1페이지)

2. 웹정보 검색방법 (2페이지)

- (1) 주제별 검색하기
- (2) 검색어 입력방식

3. 검색엔진의 종류 (2페이지)
 - (1) 한국형 검색엔진
 - (2) 외국형 검색엔진
4. 수산관련 사이트 (5페이지)

(13) 실기교육방법론 (3시간 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 등에 대해서 기본교과목을 강의할 강사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의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1장 실기교육의 성격 (8페이지)

1. 실기교육의 중요성 (2페이지)
2. 실기교육의 기능과 역할 (3페이지)
3. 현장실습교육 (3페이지)

제2장 교수학습방법 (16페이지)

1. 교수학습방법의 개념과 원리 (3페이지)
2. 교수학습방법의 유형 (6페이지)
3. 교수학습지도의 계획과 실제 (7페이지)

(14) 회의진행방법 (3시간 실습교육용)

이 과목은 어업인과정, 어업인단체 직원 및 지도자과정, 공무원과정의 체험교과시간에 토의 및 발표의 진행을 맡거나 참관하면서 교육생들을 지도할 강사육성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테크닉이나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1장 회의에 임하는 자세 (4페이지)

1. 회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1페이지)
2. 회의 방법의 숙지 (2페이지)
 - 강의식, 원탁식, 포럼, 패넬토의, 심포지움, 버즈세션
3. 회의 에티켓 (1페이지)
4. 의장의 요건 (1페이지)
 - 감정조절, 공정성, 리더쉽, 순발력, 유머

제2장 회의진행방법 (3페이지)

1. 회의진행절차 (1페이지)
 - 개회선언, 의장인사, 정족수 확인, 전의회 회의록 확인, 회의진행, 폐회선언
2. 의장진행절차 (1페이지)
 - 의제제시 및 회의목적 설명, 의견도출, 결론도출, 마무리
3. 의장역할의 숙지 (1페이지)

제3장 회의참가방법 (7페이지)

1. 다른 사람의 발언을 존중하는 자세 (1페이지)
2. 능숙한 의견 제시의 방법 (1.5페이지)
 - 상대를 비판하지 않음, 동의할 수 있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구분,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후 발언, 반대의 이유를 제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의견 제시
3. 반대의견 제시의 방법 (1.5페이지)
 - 분명한 자기주장, 증거제시, 효과제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언급,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
4. 질문시의 금기사항 (1페이지)
 - 동시의 두가지 이상의 질문, 장황한 질문, 양단간 택일을 유도하는 질문, 동일한 질문의 반복
5. 답변자의 심득사항 (1페이지)
 - 솔직함, 질문의 의도 파악, 질문자를 존중, 참석자 전원에 대해 답변, 답변 대응이 충분함을 확인, 자리모면식의 답변을 피함
6. 동의 제기 방법 (1페이지)
 - 본동의, 보조동의, 긴급동의, 우선동의

제6장 자율관리어업 교육 활성화 방안

어업을 흔히 “규제에 의한 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산활동에 대한 공적개입 내지 규제가 산업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는 생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원 및 어장이 공유재산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과, 또한 어업인 개개인의 생산활동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어업의 이러한 성격에 따라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에 대해 행정에 의한 각종 규제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60년대 이후 정책주도하에 어업 발전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어업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각종 규제가 양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어업의 성장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인접국인 중국의 어업발달과 어업인력난에 따라 대외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 가는 한편,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의 급증과 WTO체제 확산에 따른 정부지원의 감축 등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산업으로서의 어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일정한 틀속에 정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므로, 어업경영의 악화는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지간에 상당부분 정책의 탓으로 돌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어업생산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정책적 개입은 그것에 비례하는 형태로 어업경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지 보호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자율관리가 정책부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적인 어업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어업의 방식으로는 수익성 내지 건전한 어업경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제나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보다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어업인들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행정에 의한 어업의 규제는 시혜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외피를 가지게 되며, 제도란 경직성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게 된다. 이에 반해 자율관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개개 어업인의 경제적 사정에 적합한 어업의 방식을 강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여건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내용의 이행에 있어서 강제성을 갖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경제적 유리성을 어업인 스스로 실

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행정에 의한 타율적 규제가 갖는 한계성 내지 자율관리가 강조되는 경제적 배경을 이해시키고,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율관리의 경제적 유리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

하지만, 자율관리의 효과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업인 스스로 이를 실천해 보는 것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다. 실천해 본다면 그 효과를 알게 되고, 자율관리는 일층 가속화된다. 자율관리는 그러한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흔히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어업인들이 일단 자율관리에 발을 내딛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어업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며, 아울러 자율관리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이 그 목표하는 바의 성과를 거두면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어업인 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 「우수공동체」 선발 및 시상이나 「전국대회」 개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수공동체」 선발사업의 경우, 시상이라는 물량행정에 수반되어 지역간 형평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시상만을 노린 공동체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지만, 그러한 의식개혁은 어업생산활동의 과정에서 자율관리를 실천하여 그 효과를 어업인 스스로가 체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이 주도하는 강의식의 집합교육은 효과면에서 엄격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자율관리어업의 교육은 초기단계에서는 자율관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식 집합교육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 예를 들면 모든 어촌계에 대해 지도자급인 4명 정도의 교육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제2단계로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은, 제1단계의 그것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어업인 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자율관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불특

정 어업인이 아니라 자율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공동체에 한정되며, 정기의 한시적인 집합교육이 아니라 부정기적이지만 지속적이며, 생산현장에서의 방문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업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자문하고 또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형태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면 제1단계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상설지원단」을 중심으로 하여 당분간은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지만, 제2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조직된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을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원론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율관리의 본질은 지역 어업실정에 적합한 관리를 행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관리주체를 중앙정부 → 시·도 → 시·군 → 지역 어업인단체로 하향이동하는 것이므로 자율관리어업 교육의 주체 역시 그러한 것에 맞추어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교육수행주체로서의 역량인데, 예산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수행주체로서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본 교육프로그램의 공무원과정이나 강사육성과정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추진협의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배양해 갈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건일 외, 교과교육과 실기교육의 방법의 이해, 문음사, 1998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1997.
- 김기주, 수산자원학, 태화출판사, 1977
-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연수원, 2002년도 새마을운동 활동교본, 2002.
- _____, 2003년도 공직자혁신교육과정 교재, 2003.
- _____, 2003년도 독서문화운동과정 기본교재, 2003.
- _____, 2003년도 민간사회전망교육 기본교재, 2003.
- _____, 2003년도 총무과정 기본교재, 2003.
- _____, 2004년 새마을기본과정 교재, 2004.
- _____, 2004년 새마을운동 사업일지, 새마을부녀회, 2004.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국민교육계획 팸플렛, 2004.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핸드북, 2003.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2. 12.
- 이병현 외, 실기교육의 이론과 실제, 통문사, 2002.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년도.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의 방법과 운영, 한국컴퓨터산업, 1993
- 田和正孝, 漁場の生態, 九州大學, 1997
- 日本文部省, 漁場環境 : 高等學校用, 海文堂, 平成3年(1991)
- 平澤豊, 日本の漁業管理-資源管理型漁業について-, 海外漁業協力財団, 「世界の漁業
管理」, 1994.
- 宮崎縣立高等水産研修所 Homepage, www.pref.miyazaki.jp.
- 大分縣, 經營塾に關する構想, 平成13年(2001)10月 22日.
- _____, 漁業担い手總合對策事業の概要, 平成13年(2001)10月 22日.
- 北海道立漁業研修所 Homepage, www.host.or.jp.
- 北海道立漁業研修所 팸플렛.
- 日本水産廳 Homepage, www.jfa.maff.go.jp